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 ▶ 일시 : 2013년 5월 21일(화) 오후 2시
-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 ▶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주최 :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 ▶ 후원 : 여성가족위원회

개회사 ■ ■ ■



바쁘신 와중에도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평소 청소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류지영 국회의원님, 김상희 국회의원님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1.5% 수준으로 프랑스, 스웨덴 등 OECD 국가가 50%를 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통과의를 거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 규범을 벗어난 일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임신의 상당수는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나 입양으로 귀결되고 있어 생명윤리문제, 아동의 인권문제, 청소년의 건강문제 등 주요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도 이들이 사회 안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크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뿐 아니라 청소년의 임신, 출산, 입양, 자녀양육 실태를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미래여성가족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이신 류지영 국회의원님, 성평등정책연구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인 김상희 국회의원님과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방향과 입법과제가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진을 비롯한 직원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님, 조주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류지영 국회의원님과 김상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 5월 2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언

환영사 ■ ■ ■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김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좌장 김기현 본부장님과 발제를 해주시는 방은령 교수님, 김지연 연구위원님 토론을 맡아주신 김혜영 교수님, 박동혁 과장님, 조주은 조사관님, 허난영 사무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인 한부모’ 가구는 12,848가구로 전체의 0.07%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길 꺼리는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상 그 규모는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이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그 지원의 초점이 주로 성인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가족 정책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병 때문에 학교를 오지 못하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반 학교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청소년부모교육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정책이나 지원정책이 구축되어있지 않습니다.

자녀양육과 부양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서적·경제적인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 문제는 청소년 복지, 가족 복지, 여성 복지와 관련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과 그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입법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국회 활동을 통해 모든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오늘 제시된 좋은 정책이나 의견들이 기존의 부족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세미나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그 아이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류 지 영

축 사 ■ ■ ■



안녕하세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이번 세미나 공동주최 기관인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에서 남윤인순 의원과 함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하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재연 원장, 국회미래여성 가족포럼 류지영, 신의진 대표의원, 행사 진행 등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실무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님과 청소년 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부모 및 교우 등 친밀한 관계망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이나 청소년 활동 환경은 지나친 입시 교육 위주, 성적 서열주의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습능력만으로 상시적인 평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불안과 불만이 극대화 되면서 일탈적 행동으로 현실에 저항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무겁고,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에 의한 비난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내쫓겨 지기도 하며, 상대 청소년과의 연락도 끊겨 의지해 왔던 친밀한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은 어렵게 아이 양육을 결심하고 출산을 하지만 정작 청소년 본인은 아이를 키우고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동시에 공부할 수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매우 미흡하고, 녹록하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나마 미혼모 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은 임신, 출산의 과정, 기본적인 생계지원, 아이 용품 지원,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과의 교류, 지원 기관의 배려 등 심리적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회복되지만 그것도 잠깐 일뿐 자신의 장래에 대해 불안하고, 학업중단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정서적 위축감과 심리적 상처는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약 15,000가구로 추계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성장해 온 가정형편을 살펴보면 가족 기능이나 경제적 소득 면에서 매우 취약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며,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가 또래와 같이 다시 재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사회, 학교가 협력하여 청소년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확대,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 가출 및 학업중단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이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상담 및 피임 예방 등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시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앞서 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미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한부모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 성평등 정책연구포럼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청소년들의 권리보호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인 방안을 찾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의원 김 상 희

세 부 일 정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개 회 식	14:00~4:30	▷ 개회사: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환영사: 류지영(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공동대표의원) ▷ 축 사: 김상희(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의원)
발표자 소개	14:30~14:35	▶ 장내정리 및 발표자 소개 - 좌장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주제발표	14:35~15:15	▶ 발 제 1. 청소년 한부모 실태 및 지원 방안 - 방은령(한서대학교 교수) ▶ 발 제 2.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15:15~15:55	▶ 토 론 - 김혜영(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박동혁(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허난영(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청중과의 토론	15:55~16:05	
종합정리	16:05~16:10	
폐 회	16:10	

목 차

발 제 1

- 청소년 한부모 실태 및 지원 방안 1
방 은 령 (한서대학교 교수)

발 제 2

-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67
김 지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문

-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99
김 혜 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조 주 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 난 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발제 1



청소년 한부모 실태 및 지원 방안

방 은 령

(한서대학교 교수)

청소년 한부모 실태 및 지원방안¹⁾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과 자녀양육 및 입양보내기 과정에서의 경험실태를 중심으로 -

I. 조사개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현황파악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통계청 등 관련기관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를 2013년 기준 약 15000가구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중 19세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약 13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통계청 2010).²⁾

본 연구는 근래 우리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한 청소년 한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먼저 청소년 한 부모들이 겪고 있는 경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들을 대상으로³⁾ 청소년 한부모가 된 과정과 청소년 한부모로서 겪게 되는 양육과 입양보내기 과정을 심층면접조사하였다. 표집은 한국한부모가족협회 등 관련기관 협조를 얻거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면접참여지원신청을 받은 후, 눈덩이 표집(snowballing)을 통해 진행되었다. 청소년 한부모 면접대상자의 집단별 범주와 사례수는 <표 1>과 같으며, 일반적 특성은 <표 2-1>, <표 2-2>와 같다⁴⁾.

1) 이 발표문은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과제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의 내용 중 청소년 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질적조사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본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원 보고서를 인용하기 바랍니다.

2) 통계청(2010). 장래가구추계 .

3) 본 연구에서의 면접대상 청소년은 모두 여자청소년이다. 초기의 연구계획은 청소년 한부모 중 남자 청소년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대상을 찾기 어려웠고, 대상을 발견한 경우에도 면접을 거부하여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 또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시각과 실태의 한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범주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연령인 9세이상 24세이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19세를 기준으로 19세 미만 청소년과 19세 이상 청소년으로 구별하여 표집하였다. 이와 같이 19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구별한 것은 19세가 교육제도 측면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이며,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인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들이 겪는 19세 미만과 19세 이상의 경험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의견을 고르게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표 1 청소년 한부모 면접대상자의 집단별 범주와 사례수 (N=35)

집단별	범주	사례 수
미혼모	19세미만	17
	19세이상	18
양육/비양육	양육	25
	비양육	10
시설입소*/재가	재가	18
	시설	17

* 시설엔 모자복지시설과 소년원이 포함됨

표 2-1 심층면접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양육사례

번호	C	출생연도	거주지	거주형태	양육형태	임신경험	학력	가족관계	1	2	3	4	5	6	7
1	1	1988	서울	재가	양육	1	고졸	모,자녀	0		0	0	0		
2	2	1991	경기	재가	임신중 양육예정	1	중퇴	본인	0		0				
3	4	1992	서울	재가	양육	1	대재휴학	부,모,형제			0		0		
4	5	1989	경기	재가	양육	2	중퇴	조모,부,모,형제,자매	0		0			0	
5	6	1990	인천	재가	양육	1	중제적	본인						0	
6	7	1993	서울	재가	양육	1	고재	본인			0				
7	8	1993	서울	재가	양육	1	고재	본인			0				
8	9	1994	경기	재가	양육	1	중퇴	부,모,남매	0		0				
9	10	1994	서울	재가	양육	1	중퇴	부,모,형제,자매	0		0				
10	11	1990	서울	재가	양육	1	고제적	부,모,자매				0			
11	12	1994	서울	재가	양육	1	고제적	부,모,형제	0		0				
12	13	1992	서울	재가	양육	1	고제적	부		0				0	
13	14	1989	경기	재가	양육	1	대제적	부,모							0
14	15	1988	경기	재가	양육	2	고졸	모,형제							
15	16	1989	경기	재가	양육	3	고졸	모			0				
16	17	1988	인천	재가	양육	2	고제적	모,자매,이모							0
17	18	1992	전남	재가	양육	2	고제적	부,모,자매	0						
18	19	1990	광주	시설	양육	1	중퇴	부,모,형제,자매	0		0				
19	20	1991	광주	시설	양육	1	고졸	부,모,형제		0					
20	21	1993	광주	시설	양육	2	고재	부		0					
21	22	1992	광주	시설	임신중 양육예정	1	고졸	부		0					
22	23	1995	광주	시설	임신중 양육예정	2	중퇴	부		0					
23	27	1995	서울	시설	양육	1	중퇴	부,오빠,		0					
24	31	1992	경기	시설	양육	4	중졸	본인			0				
25	34	1992	경기	시설	양육	2	중졸	부,모,자매	0						

* C는 사례고유번호를 나타냄. 임신경험은 면접당시의 임신이나 출산경험이 포함된 숫자이며, 상단범주번호 1~7은 현재 생활비마련원 현황임(1 가족지원, 2 시설지원, 3 정부지원, 4 지방자치단체 지원, 5 민간단체 지원, 6 임시직 아르바이트, 7 고정직업).

표 2-2

심층면접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입양사례

번호	C	출생연도	거주지	거주형태	양육형태	임신경험	학력	가족관계	1	2	3	4	5	6	7
1	3	1997	경기	재가	임신중, 입양예정	1	중재	부,형제	0						
2	24	1995	서울	시설	입양	1	중퇴	형제						0	
3	25	1995	경기	시설	임신중, 입양예정	1	고재	조모,부,형제	0						
4	26	1989	인천	시설	비양육 입양예정	1	고졸	부,모,형제	0						
5	28	1996	서울	시설	임신중, 입양예정	1	중졸	부,모,남여동생		0					
6	29	1997	서울	시설	임신중, 입양예정	1	중재	부,모,동생		0					
7	30	1994	경기	시설	입양	1	중퇴	부,모	0						
8	32	1994	경기	시설	입양	3	중졸	부,모,형제	0					0	
9	33	1995	경기	시설	입양	1	중퇴	자매,새엄마						0	
10	35	1993	경기	시설	입양	2	중퇴	부모각각 재혼		0					

* C는 사례고유번호를 나타냄. 임신경험은 면접당시의 임신이나 출산경험이 포함된 숫자이며, 상단범주번호 1~7은 현재 생활비마련원 현황임(1 가족지원, 2 시설지원, 3 정부지원, 4 지방자치단체 지원, 5 민간단체 지원, 6 임시직 아르바이트, 7 고정직업)

한편, 심층면접조사는 연구자와 면접조사원(이하 면접원) 등, 7명이 진행하였다⁵⁾.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⁶⁾, 2012년 7월 25일에서 2012년 8월 21일까지 면접원이 피면접자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지역에 직접 가서 진행하였다⁷⁾. 면접시간은 1사례 당 1시간에서 2 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면접과정은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질문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손상되지 않고 응답자가 처한 상황과 의도하는 바가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가능한 진술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심층면접내용은 <표 3>과 같다.

5) 면접과정에서 피면접원들을 심리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 면접원들은 기본적으로 미혼부모들이 겪고 있는 제반 경험들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고, 피면접자들이 면접과정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들을 수용하고 다룰 수 있는 자로서, 이전에 미혼모들에 대한 면접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6) 면접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은 1 회 실시하였다. 이 때 면접원의 자세, 피면접자들에 대한 태도, 면접내용 및 방법, 자료 기록 및 전사 방법, 면접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등을 교육하였고, 그 후 연구원이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 면접의 전과정을 지도감독하였다.

7) 면접장소는 피면접자가 거주하는 집이나 시설의 상담실 및 근무하는 직장근처 카페 등 이었다.

표 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심층면접 주요내용**

영역		주요 면접 내용
1	임신배경과 인지과정	1. 임신을 하게 된 배경과 인지 과정 2. 임신사실 고지 및 주변반응 3. 낙태와 출산사이에서의 갈등과 선택
2	임신기간과 출산과정	1.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의 제반경험 2. 입양보내기와 양육사이에서의 갈등과 선택
3	자녀양육과정 혹은 입양보낸 후 후적응과정	1. 자녀양육과정에서의 제반 경험 (입양보내는 과정과 이후의 적응과정) 2. 양육 혹은 입양 보내기를 선택한 자신에 대한 평가 3. 앞으로의 계획
4	청소년 한부모들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	청소년 한부모지원에 대한 정책제안

Ⅱ.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입양보내기)에서의 경험실태

1. 양육사례에서의 경험 실태

1) 임신배경과 인지과정

(1) 임신배경

현재 아기를 출산하여 양육(혹은 양육예정)하고 있는 25명의 청소년 한 부모들은 임신 당시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 있었다. 재가나 시설, 혹은 19세 이상 이상과 19세 미만 모두, 대부분 가정이 기능적이지 못하고 부모 역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났으며,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남친과 교제를 하고, 결혼이나 임신에 대한 준비 없이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5 사례 중 임신 당시 13명이 가출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남친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12명의 경우도 부모가 이혼 혹은 별거를 하거나 지방에 출장을 자주 가셔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았다.

피면접자들이 당시 임신한 연령은 15살에서 22살까지였으며, 가출이나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거나 혹은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여 대부분 학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들 중에는 사귀자마자 동거에 들어가 한달 만에 아기가 생긴 경우도 있었고(C20), C21은 당시 아버지가 잦은 장기 지방출장을 가서 그 때마다 남친이 자신의 집에 한달씩 머무르면서 지내던 경우였다.

C1. .. 생략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땀고 알바같은거 하면서 그...대학을 쫓미루고 지내다가 정신차리고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중략 ..고시원 총무를 들어갔어요. 독학을 하려고...그런데 ... 엄마랑도 많이 싸웠고중략.... 아무래도 혼자 지내다보니까 자유로워 지잖아요.....술같은 것도 쫓 입에 대고 이러다보니까... 그..남자친구도 사귀게 되고 아무래도 자취하고 이러니까..... 쫓 방탕하게 쫓 지낸거 같아요 치킨시켜 먹다가 치킨집 사장 알게 됐는데..그냥 머..말동무처럼 이렇게 지내다 ...그러다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한편, C19는 남친 부모집에 들어가 6개월 정도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남친의 아버지는 동거 초기에 C19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을 비난하며, 아들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애를 낳자는 비정상적인 요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19. ...애아빠의 아빠가 계속 애를 못갖냐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애아빠나 나나 스트레스좀 받았어요중략 ... 애아빠의 아빠가 이야기를 막 .. 해요. ..중략어느날 불려서....애아빠한테 먼저 말하고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를 (따로)부른 거예요. 니가 이집에 산지 얼마나 됐는데 애기를 못갖냐고중략.....그 애아빠가 쫓 몸이 안좋았어요 어렸을때부터.....애가 몸이 안좋아서 애를 못갖는지 어찌니 둘중에 한명이 문제있니 어찌니 저찌니.....중략그 애아빠가 문제가 있으면, 애아빠 아빠가 자기랑 해서 애를 낳는게 어떠냐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2) 임신사실에 대한 인지 및 당시의 심정

청소년 한부모들이 처음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것은 생리가 나오지 않은 초기인 경우가 많았으나, 일부는 태동이 느껴지는 5, 6개월까지 임신사실을 모르고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는 연령이 어린 사례에서, 그리고 가출한 상태에서 더 많았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처음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놀라고 당황하였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사실을 남친과 사이가 나빠지거나, 헤어진 후에 알게 된 경우는, 낙태를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

C1.(임신한거 알고)...너무 절망적이었어요...그냥 좌절됐다고 해야 되나? 애를
머 지우고 이런 거 떠나서 아....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 ...중략인생
망쳤다는 기분 들었고 어....애 아빠는요 ..중략 ...저보다 열 살이 많았고 ..중략 ...
내가 이 사람과는 이렇게 사귀고 방탕하게 지낼 수 없다 생각해서 내가 헤어지자하
고 헤어졌는데..그 이후에 제가 임신을 알게 된거예요...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야되
나 말아야되나 걱정도 들고 그래서 그냥 얘기 안하고 있다가....

C12. 임신초반 때는 막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실감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정
상인처럼 그냥 생활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수업을 받고 있는데..갑자기 그 배에서
뒹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안세우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기가 그만큼 큰거죠...아..진짜 안되겠다..이러다가 나 임신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엄마한테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바
로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C34. 6개월 됐을 때 알게 돼 가출 후 갈 곳이 없어 떠돌다 1388 청소년지원센
터에서 테스트 권해서 알게 됨..... 걱정, 불안, 어떻게 키워야할지 고민....

C21. 임신6주째 알게 되어.... 테스트로.... 갑갑하고 불안..... 이전 낙태경험있어서...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그런 상황이 되면 책임질거라고 해서 관
계가 졌는데.....

그러나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사례 중, 당시에 아기아빠가 임신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결혼을 약속했을 때에는, 임신자체가 기쁘고 아기아빠와의 결혼생활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임신사실에 대한 고지 및 주변 반응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이 된 사실을 맨처음 아기아빠인 남친에게 알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친구나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기아빠들은 임신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처음에 자신이 책임진다고 아기 낳기를 권유한 남친의 경우도 대부분 무책임하게 떠나서 연락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가족과 주변으로부터도 대부분 외면을 당했는데, 가족 또한 대부분 낙태를 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아예 자녀의 일에 관심이 없거나, 낙태시점이 지나 낙태를 할 수 없게 되자 출산 후의 입양을 권하거나, 임신 7개월이 지나 위험한데도 낙태를 권유한 부모도 있었다. 현재 양육을 하는(혹은 양육을 할) 25명의 사례 중 22명이 임신 후 남친과 헤어졌는데, 16명은 임신중에, 6명은 출산 후에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면접자들은 남친의 부모님으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받기도 하고 낙태를 강요받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기아빠가 아기와 엄마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4사례 뿐이며(C4, C22, C23, C27), 이들 중 3사례는 면접 당시 임신 중이었다.

C16.애기가 (뱃속에서) 잘 크구 애기아빠한테 알렸을 때 애기아빠가 좋아하더라
고요 심장뛰는 소리도 같이 들으려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애기아빠 여자친구라고 8년을 사귀었대요.... 어 임신한거
.....남자친구가 애기 했다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갑자기 뭐 다짜고짜...말을 하는거
예요.... 처음부터 저는 당연히 뽕찌죠. 왜냐면은 그런 상태를 전혀 몰랐고 애기아빠
랑 만난지 3년이 다 되갔거든요.....그런데 어떻게 그쪽이랑 사귄수 있냐 평일에도
계속 만났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직장생활하고주말에 만났다는거예요
(음~)...어이가 없어서 애기아빠한테 어떻게 된거냐고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알아버렸으니까 다른 길이 없다고 그냥 애기 지우자 이렇게 애기 하더라고요....

C12. 남자친구에게 바로 알리고.. 자기가 책임진다고...괜찮다고.. 지금은 애기 아빠
가 연락도 안해요.. 엄마는 (처음에 아시고) 놀래서 울고..... 어떻게 이럴 수가 ...엄
마가 생명이니깐 일단 낳자고....

C20. 애기아빠한테 애기 하자마자 애기 지우라고 저한테 돈주면서 산부인과

까지 데리고 갔어요.....병원에 그때 딱 처음 갔는데 임신 7주였어요... 그때 ... 초음파를 하고 ...애기 심장소리를 들려주는데 애기심장소리 때문에.... 못지우겠다는 거예요 못지우고 나왔는데 개가 애기 왜안지웠냐고 막 그러는거예요어떻게 너는 ...뱃속에 니뿔줄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우란말이 함부로 나오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깐 개가.....그러면 니가 키울 자신있냐고...자기는 키울 자신없다면서 돈도없고 너 아직 어리잖아 이러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는 내가 키울꺼니까 그랬어요 그니까 개가 그럼 나한테 연락하지말고 나 찾지마 이랬어요알았으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C21.아기아빠 알고 처음엔 좋아하고, 낳자고..... 나중엔 지우자. 마음 변해..... 친구들과 양가부모님께 다 알리고.... 우리 아빠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남자친구를 보듬었는데, ... 남자부모는나이기도 어린데 애 지워라.....시설에서 자라 질이 나쁘다는 식으로 욕을 해대고... 나중에 애기태어나면 니 엄마가 너를 낳아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협박....

(4) 낙태와 출산사이에서의 갈등과 선택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임신 당시, 본인이 낙태를 하려고 생각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대부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한 출산의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태아도 자기자신을 해칠 때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종교적인 힘으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거나, 병원에서 초음파로 아기의 심장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낙태를 해서는 안되며 꼭 나아서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한 사실이 처음엔 놀랍고 두려웠지만,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존재와 성장을 느끼면서, 아기아빠와 헤어지더라도 낙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낙태를 하려고 하니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들도 나이는 어리지만 대부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았는데, 이들 또한 남친의 책임회피와 무관심 및 낙태중용에 맞서며,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기가 유산된 줄 알고 술이나 담배 약 등을 함부로 먹어도 아기의 생명이 끈질기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별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치고, 출산을 결심하게 되었다(C23)는 진술도 있었다.

C17. 아기아빠중략알자마자 저한테 첫마디가 “애기 지우자.” 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 지우려면 저 죽이고 지우라고 했어요,,,계속 설득하려고 했죠. 지우자넌 아직 어리고 다음에도 기회 있으니까. 저는 울면서 나는 애 못 지우니까. 그렇게 알라고 나는 아무리 그래도 애 낳아서 키울 거라고 100%확고하게 밀어붙인 거죠.....중략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거자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약 애 아빠 말대로 낙태를 했다면 그렇게는 저는 못 살았을 거 같아요. 애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을 해서든 아이는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C6. (주변에서 모두 지우라고 권유) 혼자 어떻게 키울 거냐고...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키울 거냐고 그랬어요. 다 낳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웬지 낳아야 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졌어요. 요즘에는 솔직히 청소년들 중절수술이 너무 흔하잖아요. 아무래도 성경험이 빠르다 보니까. 나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오면 (낙태)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병원에 가서 아기초음파보고 아기 심장소리 듣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한편, 어떤 청소년 한부모는 현실적인 문제로 낙태와 출산사이에서 잠시 갈등을 했으나, 부모가 낙태반대주의자로서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아기를 낳아서 기를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14.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중략 결혼 얘기가 다 깨지고 나서 혼자 낳아서 키워야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각을 안해 본 거는 아닌데사실 평소 낙태는 안된다는 생각을중략 ... 2개월? 이쯤 밖에 안됐을 때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낙태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제가 그런 일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고...중략..... 또..제가 나는 아직 절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절 믿고 있었고 제 스스로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또한 남자친구와 친오빠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어릴 때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기는 꼭 부모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자라게 해주고 싶어서, 아기를 낳을 용기와 결심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C22).

C22.얼떨결에 ...어..계획하에 임신한게 아니라.. 좀 그랬긴 했는데 그래도 남자 친구도 키운다고 먼저 그랬고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친오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옆에서 든든하게 해주고.... 그답에 뭐라 해야되지 남자친구나 저나 부모님 사랑 같은 건 못받아 가지고 우리애기한테는 꼭 엄마아빠랑 함께사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한번도 (낙태)생각을 안해봤어요

2)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1) 임신기 동안 겪은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청소년 한 부모들은 임신기간 동안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아이아빠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으며⁸⁾,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과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 등이 서글프고 힘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기간 동안 아이아빠 원가족의 간섭과 횡포도 피면접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13. 임신기간 내내 아이아빠와 사이가 안좋아.... 맨날 싸우고... 막달에 자기애가 아니라고 때리고 내쫓음.... 애기생각하며 그냥 어떻게든 견디려고 시설입소하여 도움 받았어요....

C14. 남자친구와 헤어진 게 가장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주위시선도 무서웠고, 대학동기 들 선후배 다 알게 돼서나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가 일어나고....극복은 ...숨기지 않고 오픈....엄마 친정부모 친구들이 많이 격려그러나 도움도 한계... 스스로 헤쳐나가야....

8) 양육 25사례 중 22명이 임신 후 남친과 헤어졌는데, 16명이 임신 후 아이아빠와 헤어졌고, 6명은 출산 후 버림받거나 헤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 주거생활이 불안정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미혼모자 시설을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지역사회단체에서 도움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의집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곳에서 산전산후관리와 숙식제공 및 출산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취업과 관련된 기술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시설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시설 규정이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임신기간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즉,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지원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기술을 배우러 다니고, 특정 교육프로그램에 집중도 하며, 외출시간과 외박시간을 잘 활용하여, 쇼핑이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 하면서 도움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C1. 컵케익 같은것도 배우러 다니고...중략 교육 프로그램 집중도 하고... 시설 안에만 있으면 애들이랑 자주 부딪히니까 ...외출시간에는 ..항상 나가있고외박도 한달에 한번 정도 해요.. 그때 꼭 나가서 외박하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외출가서 중략 ..쇼핑이라든가..... 친한사람 만나서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엄마 만난 다든가..에.....그런식으로..

그러나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피면접자들 중 일부는 시설의 규칙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고통을 느낀 경우도 있었는데, 외출이 제한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모든 입소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일들과 입소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내부 규칙 등(예를 들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식탁자리 우선권 등) 이 시설생활을 힘들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C18. 시설생활도 불편. 첫날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자리가 정해져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언니가 막 인상을 쓰면서궁시렁 거리는 거예요...그러면서 큰 소리로 아...요즘 신입들은 참 무섭다?...진짜 무섭다?...이러는 거예요.....밥을 쫌 대충 먹고 올라갔더니 어떤 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거기 앉으면 안된다고...거기 켜..기 언니 자리라고 앞으로 조심해서 앉으라고..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그냥 쫌 황당했어요...그리고..어..거기서도 이렇게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힘이 약하게 보이고..... 떨어지게 보이면 막 사람들은..... 다 이용해먹고 청소 더 시키고 그런 건 있었어요..

또한 피면접자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양의무자가 부모라서 모든 지원이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이 기능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면접자들의 경우는 사회적 지원을 받는데 제약을 받고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지원방침이 틀려서 불편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C6. 앞날에 대한 걱정. 아기 낳으면 일 못할까봐 걱정....당시 ..무엇을 하려해도 부모동의가 필요해서 그게 힘들었다..... 사회지원이 정말 없어요. 또 지역의 지원사업이 구마다 너무 틀리고 방침도 틀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내가 정말 어려워서 가도 부양의무자가 아빠로 되어있으니까. 아빠도움을 받지 왜 여기 와서..... 여기선 도움을 줄게 없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임신 초기에 스스로 많은 정보를 검색하여 준비를 한 경우,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무난히 극복해 나간 경우도 있었다.

C1. ..초기에 알고 대책을 세웠어요..미혼모(지원)에 대해서 찾고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부모님은 인정 안하시고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 상황도 별로 집도... 시설에 들어갔어요...임신 2-3개월 때부터 거의 일년 간 있었어요..... 애기 낳고 애기가 3개월정도 될 때까지..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시설에서) 거처마련해주고 숙식 제공해주고 이것저것 신경써주고 좋았어요..

한편, C21의 경우, 임신하면서 아빠로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 이를 계기로 아빠와 더욱 관계가 좋아져서 임신기간동안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C21. 10월 달엔가 입소를 했거든요임신후 아빠가 냉정하게 대함 그런데 아빠가 ... 너는 저 남자애를 믿냐..... 저도 믿지는 않는다고 아빠가 아휴 이러시더니 ...제 친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엄마가 열아홉살 제 나이 때 얘기를 낳으신거예요... .. 아빠는 ...결혼을 하셨었는데 자식이 없으셔서... 그 애를 입양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거예요 엄마를 엄청 챙겨주시고 애 낳을때까지도 아

빠가 옆에 있어주셨데요 그딸이 저라고 .. 아빠는 니가 임신을 했다 했을때 너희 엄마랑 똑같은 상황을 겪어서 마음이 아팠다 제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는거라고.. 그래서 아빠가 그동안 못챙겨준거 미안하다면서 ..아빠는 맨날 울면서 일한다고 우리딸이 임신을 했는데 뭐라도 잘 챙겨 먹었을까 그 남자애가 때리거나 뭐라 하지 않을까 내내 걱정한다고... 그 뒤로부터 아빠가 막 챙겨주시고 이제 임신 배가 불러오면 우리딸 배 많이 불렀네 이런식으로 챙겨주세요.....

이상을 살펴보면 피면접자들은 임신 기간 동안 아기아빠와 갈등하고 헤어지며, 특히 아이아빠가 바람을 피고 떠나가는 경우, 가장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지원 없이 혼자서 임신기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외롭고 서글펐으며, 임신 때문에 학교(또는 직장)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도 힘든 요인 중의 하나였다. 자신과 아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임신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며, 임신기 동안 주거시설이 불안정하고 임신기간에 필요한 진료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요인이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의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문제와 물리적 어려움들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를 통해 많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입소의 경우, 외출이 제한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며, 시설 내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어려운 것 등 다소 불편한 점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주거문제와 생활 문제 및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용한 제도이고, 더불어 임신기간 동안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었다⁹⁾.

(2) 출산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출산과정에서 피면접자들은 출산준비를 대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사례 중 17 명이 시설입소를 통해 임신기간 조리를 하고 출산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입소한 시설은 대부분 ‘중간의 집’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었으며, 피면접자들은 중간의 집에서

9) 그러나 면접 사례 중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시설입소내용을 알지 못하여 시설에 가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c9).

기본생활지원을 받으며 출산 전과 후 에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일반적으로 피면접자들은 임신 3-4개월 정도 되었을때 시설에 입소 신청하여 입소하였으며, 이곳에서 주거와 식생활 및 산전 건강관리를 받고 기관에 따라서는 산후 조리 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력이 없으며 가족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미혼모자가 족복지시설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C17. 만약 혼자 였다면 되게 외롭고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랬을 텐데 (당시엔) 애기아빠도 있었고 시설 담임선생님도 있었고 해서 많이 편했었고 애 낳고 서는 그냥 감사했어요. 애 낳아서 품에 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중략저는 애기 갖고 낳았을 때까지 기간을 보면 그 시설이라는게 없었으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애기 갖기 오래전부터 가족이랑도 연락 뜬똥똥 하고 잘 안가고 했던 상황이라서 이런 시설이 없었다면 애기아빠 말처럼 애기 지웠을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제일 도움 된 게 시설이란 게 있고 그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자체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준비를 대부분 시설에서 해결하고, 고운맘 카드로 출산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출산에 필요한 아기용품과 기저귀, 분유도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시 아기가 아프거나 특별한 예방접종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 부담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청소년 한부모들이 대응하기엔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면접자들 중에도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을 한 경우에 특별진료비가 발생하여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거나(C18), 제도를 잘 몰라서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경우, 출산비를 부모가 마련하거나(C5), 할머니 외할머니가 아기를 돌봐 준 경우도 있었다(C5). 이들은 시설 뿐 만 아니라 고운 맘 카드 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 사용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5조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주거지원서비스는 모부자 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가족복지시설로 나누어진다. 이 중 중간의 집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미만)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위한 기본생활지원 과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출산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를 위한 공동생활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이중 기본생활지원은 최대 1년(6개월 연장)이고, 공동생활지원은 최대 2년 (1년 연장)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 한 부모들이 출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아기아빠나 자신의 부모 등 가족이 곁에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진통을 겪으며 아기를 낳는 것이 었다. 이들은 대부분 출산시 너무 서럽고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13의 경우는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한동안 아기가 보기 싫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1. ...막 진통할 때 어...너무 힘든데....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그거 ..그땐 슬픈 이런 느낌이 없어요.....낳고 나서는 참...초라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간호사 분한테 와서 나하고 같이 좀 있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막.....거의 울부짖다시피 했고..... 시설 분들 당직 간호사 오셔서 위로.... 엄마에게 연락... . 시설에서 도와줌. . 시설에서 산전 산후 체조.... 잘먹여주고....운동시켜주고, 잘 낳게 도와줌..... 산후조리도 시켜줌...

따라서 출산시 이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지원은 심리적 지지를 통해 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피면접자들은 부모의 수용과 같은 정신적 지원이나, 아이아빠가 진통시 함께 해주었을 때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16. 음~ 출산 했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도 너무 힘들었기 때 문에 두 아이 보낸것(이전 유산) 도 생각이 나고... 이 아이 마저 못 지킬 뻔 했 다는게 생각이 나고(낙태 강요, 아기아빠 다른 여자와 결혼)..여러 가지 떠오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출산과정에서 받은 도움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출산비 30만원 지원 받았구요 ..애기 난 후에.... 나머지 30만원은... 기저귀 지원을 받았어요 아빠가 집을 해주시고, 새엄마가 음식을 조금해주시고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지원해 준게 아무래도 가장 컸던것 같아요편하게 체집에서 낳은 거니까 가족들이 애기 돌보는 데도 새벽에 들어오시면 애기가 자다가 우는 경우.... 신생아니까 그러면 저희 아빠가 와서 봐주시고 하셨거든요.....

C8. 시설입소. 국립의료원시설에서 출산..... 출산시 엄마가 도와줌. 심정은 무서웠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막막하지만..... 지금 가족을 만나 심리적인 문제 해결 됨..... 가족을 다시 만난 거.... 가족이 경제적인거 도와주고.....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있어줌..... 수급비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아기아빠에겐 아무도움 안 바람....

C7. 출산할 때 혼자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엄마가 나중에 오심.... 이틀간 조

리해주시고..... 시설나와 ..다른 .시설에 가서 3개월 조리.... 병원비, 숙식제공, 출산비용 제공, 기저귀 제공,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원장님이 자상하게 챙겨주셔서

C27. 막달에 시설들어옴..... 병원진료 처음 받았고.....진통후 병원.... 시설에서 출산비용대주고, 기본 아기용품 제공.... 해산급여 50만원으로 나머지 물품 구입함..... 시설에서 산후조리도 해줌... 남자친구가족이 내복과 로손 사줌..... 아기가빠와 계속 연락.... 사이 좋고... 주고 받은 편지가 한가득.....

또한 피면접자들은 출산 후의 일들이 더 두려워 주변에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산을 한 경우도 있었고 (C6), 출산 후 주거문제와 기저귀 분유값이 너무 비싸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C18), C11은 주변에서 자신에게 입양을 보내라고 자꾸 권유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다고 진술하였다.

C11. 주변에서 입양해라 이런말 만 안해도 도와 주는 것.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시에 아이아빠나 가족 없이 혼자서 진통하고 분만한 것이 가장 서럽고 힘들었으며, 이 때 아이아빠가 함께 하거나 부모님이나 가족이 곁에 있어준 경우엔,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출산시 대부분 모자복지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산전 산후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았는데, 청소년 한부모들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출산준비와 출산 관련 지원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해 하고 있었으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만족한 반응을 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고운맘카드로 출산시 병원비를 지불하였으며, 출산격려금과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받고,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민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입양보내기와 양육 사이에서의 갈등과 선택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출산 후에 아기를 양육하는 것과 입양보내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했을 때부터

대부분 자신이 아기를 키우려고 결심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자기자식에 대한 애정과 출생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재가나 시설의 경우 모두 비슷했는데, 연령에 따라서도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피면접자들 중에는 잠시 입양 보내는 것을 고민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특히, 19세 미만 피면접자들 중에는 부모나 주위의 권유나, 자신의 불우한 처지로 인해 아이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산후 우울증 등으로 인해 한번쯤 입양을 보낼 생각을 한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또한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아이와 함께 공유한 경험들과 출산시의 고통과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입양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6. 입양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낳으려고 결정을 했지. 입양을 차라리 보낼 거였다면 중절수술을 했을 거예요.아이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낳고 싶었고임신하고 힘들었을 때에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중략... 활력소였던 거 같아요. 그 힘든 시기에 내가 아이한테 의지했었던 거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C13. 솔직히 애기 입양을 신생아 때는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커갈수록 너무 미안한 거예요. 괜히 제가 욕심을 내서 키우나... 차라리 입양을 보냈다면 평범한 가정 밑에서 잘 클 수도 있었을 텐데...중략... 지금도 가끔 입양생각을 하긴 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애가 와서 보고 웃어주면 그냥 또 웃고만 있고... 애기 키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남한테 보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친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더 애기한테 좋을 거고 제가 낳았으니 제가 책임지고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중략

한편, 피면접자 중에는 입양 숙려제도를 강조하며, 엄마가 정신 차리면 우리사회는 얼마든지 한부모가 아이를 키울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C1. 진짜 입양은 숙려제도가 필요해요.. 중략저는 임신 8개월때 결정했거든요.. 입양안보내고 내가 키우겠다... 왜냐면 주위에 키우는 엄마들을 봤는데...어느정도 지원을 받고 내가 정신차리고 살면 애기 하나는 내가 키울 수 있겠다..이런 생각을 했어요...아무리 힘들어도..내가 힘들게 살더라도중략 ...그래서 임신 8개월때 결정했고.... 애낳고는 아....정말 내가 애를 책임지기를 잘했구나..왜냐면 애를 만약에 보

냈다면 그..출산하고 바로 모유 수유하잖아요... 모유 수유할 때도..내가 애한테 최선을 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내가 너를 안보내고 한 인간에게 해 줄 수있는 모든 사랑을 다 내가 어쨌든 나의 자식한테 해줄수 있구나...(모유수유하면서) 다른 남도 아니고 내자식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줘야 되지않을까...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 양육과정에서의 제반경험

(1)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였다. 이들은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주거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엔 청소년 한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아이아빠의 빈자리로 인한 심리적인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① 아이아빠의 헤어짐과 아이아빠의 빈자리

청소년 한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양육과정에서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힘들어한 것은 자녀가 커가면서 아빠를 찾는 것이었는데, 아빠없이 자라야 하는 자녀가 불쌍해서 매우 가슴아파하였다.

C13. 애기가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가족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럼 친구들은 아빠얘기 하고 “아빠가 뭐해줬다.” 얘기하면 애가 집에 와서 “아빠 아빠”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미안해서 괜히 애기한테 화내고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중략....

또한 면접 대상자들은 아이아빠와 헤어져서 외롭고 불안하며, 외부에서도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위축되고 서럽다고 하였다.

C13. ... 저도 밖에 나가면 애기아빠 뭐하는 사람이나.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대

답을 못하니깐. 저 자신도 너무 속상해요. 사람들에게 초라해지고... 일을 할 때 면 접을 볼 때도 애 혼자 키운다고 하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애 아빠의 빈자리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한편, 청소년 한부모들 중엔, 아이아빠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바람을 피워 떠나고 그 충격과 배신감으로 상처가 커서 매우 힘들어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엔, 우울증이 겹쳐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아이아빠와 인연을 끊고 자립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었다.

C17.. 애기 낳고 두 달 동거.....중략...여자가 있었는데 저를 속이고 만난 거죠... 중략...그 여자한테 아이가 생긴 걸 안거예요.....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중략...내동 생이 와서 아예 친정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 제가 애 가졌을 때 십자수로 만든 배넛저고리나 속싸개나 손, 발싸개그걸 다 버린 거예요. ... 아무리 화가 나도 솔직히 저보다 화가 났을 리 없는데 방 빼고 그걸 버렸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애 가지면서 십자수하고 했던 걸 다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한번은 제가 자격증 따려고 다니는 학원 앞까지 찾아와서 저를 한번 폭력을 했어요.... 그 일이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C31. 임신 후 헤어짐..... 애기아빠 산체로 땅에 묻어버리고 싶어.....

② 일과 양육 양립의 어려움

면접대상자들은 아이아빠없이 혼자서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특히 직장을 다니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모자가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였다.

C2. 경제적인게 가장 힘들. 청소년 한부모가 일을 하면 지원을 안해주는데...그게 힘들. 정규직으로 일하면 지원이 끊겨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려함. 전셋집 얻고싶고... 지원포기하고 일하면서 아이랑 살고 싶어.....아이 아플때 가장 걱정되고 돈문제가 가장 힘들.

C16. ...청소년 한부모에게 매달 15만원씩 나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또 1년에

(위기지원비) 70만원 씩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한달에 10만원이 최대예요 아기 신생아면 분유값 아니 기저귀값에다가 뭐에다가 애기 용품도 그렇고중략....만약에 제가 직장에 다니지 않았으면..... 어렵도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애기 키우면서 어려운게 제가 일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애기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애기가 12개월 까지는 엄마가 봐줘야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초수급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안된대요간호조무사자격증이 있어서 얼마든지 제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게 애기낳고 어떻게 바로 일을 시작해요 몸 풀지도 않았는데 애기도 엄청 어린데 누가 봐 줄거예요...

③ 시설에서의 불편한 생활, 그러나 퇴소 후 더 힘든 생활

한편 청소년 한부모들 중에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힘들어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입소기간동안 외출시간이 제한되고 프로그램참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불편을 참지 못하고 퇴소한 경우, 주거문제나 필요한 아기 물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이 과정이 더 힘들어서 퇴소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C8. 시설에 있었을 때 ..중략....시설분위기에 따라가야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나오니까주거문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수급비는 받고 있지만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운다는게 ... 남들이 보기엔나라에서 그렇게 돈 많이 받냐고 제가 한 지금 90만원 돈 받고 있거든요(음~) 근데 제 생활비 다 쓰고.. 뭐 휴대폰요금.... 엄마한테 도움 안 받고 제가 다 해결할라고 하니까 아이 이유식, 반찬값 이런거 빼면 솔직히 정말 남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은 경제적인게 너무 힘들고 엄마혼자서 키워나가기에는 내가 너무 많이 힘들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④ 불안정한 주거문제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지낼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이들에겐 미혼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C16. 아무래도 제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데 제가 가장 절실 했었어요중략...직장에서 근무..... 4대보험이 있으면 4대보험을 해지한 이후로....3개월 지난 시점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게 20주였으니까 그 3개월 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중략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

⑤ 산전 산후 우울증

청소년 한부모들 중엔 산전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양육과정을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13. 애기 낳고 산후우울증이 와서 한동안 아이가 진짜 싫었어요. ... 친정식구들이 다 낡자.. 털어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싶지만 애기 때문에 못 만나고... 극복을 못했죠. 쌓이고 쌓이다 애기한테 풀고...아기 키우는 과정자체가 극복과정. 지금은 아기 때문에 인생목표가 생기고 열심히 살게 돼....

C12. 육아가 너무 힘들어, 신생아때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혼자라는 것, 남편없는 것, 사회의 시선, 등 감정 억누르며 참아... 양육수당, 보육시설 무료, 미혼모 시설 숙식제공 등 지원받음.. 제도적으론 더 이상 바라는거 없어..... 다 도움이 되고 있어요....

⑥ 원가족과의 불화와 갈등

청소년 한부모들 중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힘들어 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자신의 문제로 인해 부모가 실망하고 가족간 불화가 생겨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C14. , ... 사실 남보다 가족사이에서의 불화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이해하고 양육을 도와주신다고 해도 부모님이 저를 20년 넘게 키워주신거잖아요 20년동안 설계했던 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서 오히려 더 많이 혼란을 겪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가 옆에서 보기에선 오히려 더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보였어요(그것 때문에 조금)음~가족 간의 불화(요인)이 저에게 충분히 있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서로 단순히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해도 그 얘기가 꼬집어 나오고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평화롭게 지내다가도 불현듯 그 얘기가 꼬집어 나오고 그러면서 소소한 불화들이 끊임없이중략 ...

C27. 엄마랑 인연을 끊었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애 키우면 엄마 인연 끊을꺼라구. 엄마도 중요한데 제 얘기도 더 중요한 것 같구, 생각 많이했어요. 임신하면 울면 안 된다는데 맨날 울고.. . 부모가 아직 나를 인정해주길 바라요.. 아기낳고 나서 잘 키우려고 노력.... 내친구들과 같은 생활 못해 가끔 힘들고 친정엄마랑 인연 끊은것 가장 힘들어요.

⑦ 새로운 출발에 대한 두려움

한편 시설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 중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지 않게 볼까봐 걱정하고, 아이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라는 사실이 관계를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C21. 솔직히 낳고나서도 애기아빠 문제가 있으니까 내내 애기한테 신경을 못 써준 거 같아요 화도 많이 냈던거 같고 많이 울고 많이 우울했고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애아빠도 만나는 사람이 있듯이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절보면 그래요 처음 만났을때랑 지금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낀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엄청 우울하고 애한테 화도 잘내는 편이고 좀 밝아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잘 웃고 그러니까 많이 변한 거 같대요 애기를 보면서.... 그래도 애 때문에 산다 라는 말이.... (걸려요)..

C34.많이 좀 힘들 꺼 같아요...애기 혼자서 키운다는 게...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한테 애기 있다는 사실 말하면중략...지금은 그냥 애기랑 오순도순 잘 살다가 나중에결혼을 ...할까 생각중인데..(웃음) 근데 애기 때문에 막상 쯔름 안될꺼 같기도 하고..

(2)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과정

청소년 한부모들은 다양한 경로로 위와 같은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었는데, 먼저 이들은 아기를 키우는 자체가 생활의 원동력이고, 부모와 가족의 지지를 받을 때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들에겐,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었는데,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고운맘카드와 맘편한 카드, 시설입소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및 출산과 산전산후 관리, 위기지원비와 양육수당 지급, 무료 예방접종, 무상보육, 분유와 기저귀 등 아기용품 지원, 출산 후 1년 동안 수급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문화바우처 지급,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한 영양보충식품공급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연계 교육도 받으면서 취업기회도 갖고, 다양한 기술교육이나 검정고시준비반이나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등록금도 지원받았다. 특히, 시설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양육예정인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시설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진술하였고, 연령이 어릴수록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들은 시설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아기 물품이 제공되며, 학업이나 취업과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어서 대체로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설종사자들로부터 심리적 지지도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 시설의 경우, 지역 혹은 기관장의 역량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시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들은 지역의 한부모 센터나 자조모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도 하였다.

C13. 애기 낳기 전에 제가 많이 방황도 하고 자리도 못 잡고 했거든요. 애기 낳고 부터는 생활이 딱 잡히는 거예요. 목표도 생기고 대학도 가야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다 패스 했거든요. 애기 때문에... 애기가 있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C4. 고운맘카드(20-50 만원 계속 증가 해옴)(2012부터 맘편한 카드 120만원) 출산비 70만원,
..... 제가 자조모임을 좀 다니다 보니까 다른 엄마들을 좀 알게 돼서 그 엄마들이랑 좀 만나기도 하고 서로 알고 있는 것들에 공유가 되고..... 이런 연령에는 그렇다더라 ... 아기의 발달상황에 대한 공유가 되고 확실히 큰 어려움은 없었던것 같아요 아직 9개월 이기도 하고...

C20. 현재 모자보호시설에서 아기 키우고 (9개월) 자격증따서 퇴소후 열심히 아기 키울 생각... 아기 키우면서 내가 힘을 내고 너무 예쁘고...애기 아플때 힘들고...아빠 빈자리생각나지만..., 아플때나 급할때 부모님이 도와주셔.....수급비,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지원받아... 어린이집 무료로 (고용센터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맡김)..

C10. 시설생활은 매우 편안했어요. 육아힘듦. 분유값 비쌌. 아기아플때, 육아 때문에 놀러 못가는거 힘들. 보육비 20만,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15만, 기저귀값 월 53000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월 15시간 지원받음. 도움 많이 됨. 현재 부모집 근처 중간의 집에 들어가려고 신청한 상태임(지원 많음, 옷값 2개월에 10만원 이상, 모든 아기용품 충분히 제공, 주중 시설에서, 주말 집에서 지낼 계획.....(근데 왜 부모님집에서 분리를 할려고 그래 거기서 계속 살수도 있을텐데?) 제가 여기 0000시설 지원한 가장 큰이유가 저희집이 이 근처잖아요지원도 제일 많이 해주고 애기 옷값으로 2개월마다 10만원씩 나오는 거 같아요 별의 별 거 다 나와요 ...그 쪽으로 가면 지원이 더 많이 나오니까 집이 가까우니까 주말에 여기서 지내고 평일에 거기서 지내고, 분유가 다 지원 나오고 우유도 지원 나오고 너무 좋아..

(3)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

현재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신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것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기를 키운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며 7사례(C1, C2, C4, C11, C13, C16, C18)는 한 번도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한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며, 아이가 없었으면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 지 상상할 수 없고, 아이 때문에 가족과 친밀해지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특히 19세미만의 경우, 아이로 인해 인생목표가 생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모두 아기를 낳아 기르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아기를 키운다는 사실이 뿌듯하며, 내 아이는 절대로 보육원(예전 고아원)에서 자라게 하지 않고 부모인 자신이 직접 기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C13. 잘한 거는 애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가족과도 더 친밀해졌죠. 원래는 사이가 많이 안 좋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더 많이 친밀해지는

거 같아요.(주변에 나와 같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결심을 한다면)...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그렇겠지만...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은 없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C12. 일단 애기 볼 때에 이렇게...이렇게 더 예쁜 짓하고 그럴 때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옛날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무언가에 이렇게 목표의식이 있거나....어..막 되는대로 살자 이런거였는데....애기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가장이라고 해야되나?... 아무리 었어사는 입장이라고 해도.....책임감도 생기고 어떻게든지 일단 무얼 해야겠다..인생목표가 생기고 바름 살려고 생각은 하니까.. 그런면에서 훨씬 저한테도 좋다고 생각하고....

C6. 지금은 일찍 낳은 게 너무 좋아요. 한편으로는 잘했다.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편하게 내 아이 랑만 지내고 싶거든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잘했다. ...중략그러나 나같은 청소년들 중 중절수술을 놓쳐서 임신한 한 상태로 흐지부지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아이가 힘들잖아요. 정말 아이를 방치하는 사람들도 만차나요. 아무런 느낌 없이 중절수술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낳아서 입양을 보내는 그런 거는 상처 아이에 대한 애착도 없이 시기를 놓치는 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순간에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크면 솔직히 말할거예요.엄마는 학교 다니다가 너를 낳았는데 여태껏 엄마가 너를 지켰고 부끄럼 없이 키웠다고. 너를 낳아서 후회한적 한번도 없고 너를 의지했다고 솔직히 털어놔야죠.

그러나 다른 청소년이 자신과 같은 상황일 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질문에선, 용기를 갖고 출산과 양육을 하라고 권하겠다는 경우도 많았지만,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 따르므로 비록 자신은 출산과 양육을 선택했지만, 다른 청소년에게겐 낙태와 입양보내기를 권하겠다는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C5. (아기 키우는거 후회한적)가끔씩 하는 거 같아요 ... 몸은 일하고 나서 힘든데 애까지 이제 막 보채거나 저녁에 애가 막 너무 아플때는 괜히 내가 키운다고 고집 부려서 애를 힘들게 하는 건 . 아닌가.... 막 이쁜 짓을 한다거나 이제 많이 컸다고 느껴질 땐 (잘했다고 생각).... 비슷한 처지에 청소년이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저는 말리고 싶어요. 몸이 힘들니까 요즘은 둘이서 키워도 힘들다고하잖아
요 근데 혼자 키울려면 두배로 더 힘들거니까....

(4) 앞으로의 계획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혹은 양육할 예정인)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으며, 엄마로서 그리고 자기자신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강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아빠와 아이와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아기아빠와의 교류문제

현재 양육을 하고 있거나 양육예정인 사례 중 아이아빠와 계속 교류를 해온 경우는 4사례뿐이었다. 아이아빠와 헤어진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아빠와 앞으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떠한 교류도 원치 않아 ; 인연 끊고 살리라”

이들은 앞으로 아이아빠와 어떠한 교류도 원치 않은 사람들로서, 가족으로 결합하거나 아이에게 아빠역할을 해주거나 양육비지원 등 어떠한 교류도 원치 않았다. 대부분 이들은 아이아빠가 신뢰로운 사람이 못되며, 남편으로서 또 아이아빠로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아이아빠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태도에 환멸을 느껴 관계가 정리되기를 원했다. 이들 중에는 아이아빠가 나타나 주는게 자신을 도와주는 거라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으며, 아이 엄마쪽에서 먼저 연락을 끊고 교류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C20. 교류 전혀 안하고... 군대 있는 남친이 애기 절대 안보고 나랑 잘해 볼 생각 없다고 말함..... 애아빠 얼굴도 보기 싫고 앞으로 교류 절대 안할 것임.....

C1. 아이아빠는 전과자, 폭력 심하고...아이아빠로서 부적절...

C6. 헤어진 후 내가 번호 바꿈. 더 이상 엮이기 싫어 딱 끊음. 다시 합치기 원치 않음...

“교류는 원치 않지만 양육비는 부담해야”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재 교류가 없고 앞으로도 아이아빠와 다시 결합하거나 관계개선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의 양육비는 아이아빠가 책임질 주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었다.

C16. 다른건 바라지 않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그냥 깨닫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기아빠는 저한테는 미안한데 애기한테는 미안하지 않대요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한테 미안할게 아니라 되려 애기한테 미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책임을 지지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빈말이도 좋게 하면은 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애기 아빠노릇을 할 수 없다 근데 니가 애기를 낳기 원하면은 내가 애기를 못 봐주더라고 니가 내 뒤통까지 잘 키워주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했어도 제가 여기까지 안왔거든요 근데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송까지 하고 있거든요 애기아빠가 하루빨리 자기 죄 뉘우치고 양육비나 잘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바라는 건 없어요

“다시 돌아와 아이에게 아빠역할 해주길”

반면, 일부는 아이아빠가 일방적으로 떠난 경우임에도 다시 돌아와 함께 살면서 아이에게 아빠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C14. 아기책임을 떠넘길 생각없으나,.. 아기생각하고 아빠역할 일부분 해주길 바라...

“호의적 교류 중, 여건이 되면 함께 살고 싶어”

현재 양육사례 중 4 명은 아이아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앞으로 함께 사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C4, C22, C23, C27) 이들 중 3명은 19세미만으로 현재 시설에 있었고, 두명은 임신 중이었다. 이들은 아이아빠가 자리를 잡으면 자주 볼 것이고(C4),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을 할 것이며(C22, C23), 한 사례는 아이아빠가 고등학생으로 현재 소년원에 있으나, 아이아빠로

서의 책임감을 갖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특등급을 받았는데, 출소 후 함께 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27).

C27. 아기아빠 현재 소년원 특등급(모범)..... 대전내, 외출, 전화가능..... 시설 나가면 함께 살 것임...서로를 격려하는 편지 많이 써서 한 가득

② 아기에 대한 소망

아기에 대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소망은 대부분 동일하였다. 이들은 재가에 있거나 시설에 있거나 혹은 19세 이상이나 19세 미만이나 상관없이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원하였다. 아기의 건강은 모든 사례에서 소망하고 있었고, 아기가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대하였다.

“상처받지 않고 자라길”

이들이 아기의 미래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교친구들과 주변에서 놀림을 받고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것이며, 특히 출생과정이나 아이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나 혹은 아빠의 빈자리로 인해 상처 받는 일 등 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가 주변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주눅들지 않으면서 당당하고 밝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C16. 음~애기가 커서 상처받을 까봐 걱정이 되요애들이 놀린다던지 솔직히 자기가 잘 극복하면 되는거 같애요 그리고 저는 미리 애기를 할거예요 만약에 애들이 놀리고 이런일로 뭐 니가 정말 힘들고 학교 생활이 힘들고 진짜 못하겠다 하면은 엄마한테 애기를 해라 꼭 학교만이 길은 아니잖아요 요즘 뭐 검정고시도 있고.... 저는 왕따당하는데도 억지로 다니면서뭐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느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제 옆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던지저는 제일 두려운게 자기 아빠가 자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까봐 좀 두려워요.... 그걸로 인해 받을 상처가 많이 있을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바라”

한편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고, 성장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는 강한 모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영재가 되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나와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명문대와 인기연예인, 운동선수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면서 자녀가 평범한 삶 보다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유명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엄마 아빠 닮지 말고 반듯하게 자라기를”

또한 엄마아빠처럼 사고치면서 자라지 말고 좋은 가정에서 바르게 잘 교육받은 아이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경우도 많았고, 자신감 있고 재주가 많은 아이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C4. ...어 그냥 말 잘듣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잘 웃고 어디서 그냥 이렇게 버릇없다 이런 얘기 안 듣고 그냥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가정교육 잘 시키고 싶어요 가정교육을 잘 시켜도 다른사람 관점에서는 (우리같은 사람)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랬거든요 .. 그냥 뭐 저희 집은 저희집 나름 대로 키웠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쪽 그 시집 그 애기아빠 부모님과 겪은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런생각이 들었나봐요) 네 그냥 여기저기서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③ 자신에 대한 계획

자녀양육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대부분 자기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계획, 결혼에 대한 계획, 소질개발에 대한 계획 등 다양했는데, 이러한 계획은 재가나 시설 혹은 연령에 따라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학 진학에 대한 소망”

양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가장 많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여 특정분야의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며(C1, C4, C5, C6, C8, C9, C12, C13, C15, C18, C21), 이를 위해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거나, 한부모센터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전문분야는 보육교

사, 간호사, 특수교사 등 이었는데, 수간호사까지 되겠다는 의지와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갈 희망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현재 학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많이 아쉬워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소망을 나타내었다.

C13. 다음 달이면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거든요. 간호조무사 1년 과정하고 시험 본 다음에 3년 하다가 간호대학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특기생으로 간호시험 합격하고 열심히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수간호사까지 하는 게 제 꿈이에요.

C18. ..그냥 독학사 인강 듣고 있는데요..내년에는 독학사를 이렇게 꼭 취득을 해서 대학원도 가고 최종목표는 좀 큰 꿈이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인 불안을 많이 느끼며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정된 직업을 찾아 아이를 잘 키우고 자신도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취업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대부분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원하는대로 다 참여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C27.취업성공패키지라고(직업교육을) 상담하면서 저 지금 교육 받고 있는데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메이크업 하고 싶었는데요, 메이크업은 취미로 하고 싶었던 거구요, 바리스타로....저 카페 같은 거 되게 좋아하 는.... (바리스타도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야).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로 하면 나라에서 300만원 지원을 해줘요. 그 (배움)카드로 결제해서 수업듣고.... 제가 학원다니는 동안에는 애기 봐주시는 선생님이 봐주시고 저는 갔다 오면 애기보고, 학원가면 또 학원가고..근데 아직 학원은 안다녀요.아직 상담이 덜 끝나서요.1단계,2단계 3단계(과정이 있고)..... 학원다니면 거기서 또 줘요, 돈같은 걸. 뭐 사먹고 그런 걸 모아서 저축하고 그리고 자격증으로 카페같은 데에 취업이 되면또 나라에서 취업 성공했다고 100만원 또 줘요. 그럼 또 저축했다가 그 카페에서 일을 하

면 또 100만원 들어오는거예요.....

C34. 약 1년간 아이 못보고... (소년원). 아기 데리고 키우고 싶어요...여기서 ... 텔레마케팅 자격증 취득하고..... 네일아트 일 혹은 식당 서빙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나쁜 애들도 안 만나고 성격도 고쳐나갈 계획이에요.....

“나 자신을 가꾸며 살고 싶어”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중단됐던 학업을 계속하거나 자기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자기몸을 관리하면서 보다 더 자기자신을 위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망도 나타냈는데, C11은 한부모센터에서 지내면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밴드활동도 하고 싶고, C14는 대학에서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하여(문예창작전공) 문예창작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한편, 외모를 안가꾸는 자신이 싫어 떠났다는 아이아빠의 말에 충격을 받았던 C18은 외모관리도 하여 멋진 모습을 되찾고 싶어 하였다.

C11. 솔직히 하고 싶은 건 밴드데..... 애기 키우면서 연습도 해야하고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어....밴드 할라고.. 밴드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랬었는데거의 이제 좀 자유로운 영혼?이런 느낌이에요..어디 워매이지 않고.....그냥 쯤 제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애기가 있으면은 쯤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애기가 아프면.... 연습을 못하는데 머..멤버들이랑도 싸우고그러니까 쯤 힘들 꺼 같다는 생각? 근데 이제 미혼 엄마 중에 밴드 하고 싶은 엄마가 있었어요..그래서 그 친구랑 하자하자 이랬었는데..

“아이아빠랑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

양육사례중 아이 아빠와 비교적 호의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사례는 4건이고 이중 c22와 c23은 현재 임신중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있었는데, 앞으로 아이아빠와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C23 ... 저는요 애기를 낳고 남자친구랑 이제 집을 구해서 셋이서 사는거요(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아이아빠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지금 남자친구 가장 보고 싶어요.....돈 때문예요....저를 만나면 돈을 써야되고 맛있는거 사줘야되니까..... 한번 만나면 한 십 만원은 깨질 거예요 먹는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한편 아이아빠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무너진 상태에서 아이아빠와 다시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출발을 하고 싶다는 사례도 있었다. C17은 아이아빠가 빛을 지고 도망간 바람에 현재도 그 빛을 갇느라 고생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교체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C20. 결혼하고 싶고요.. 나랑 애기랑 그 이해해줄 수 있고 착한 사람 만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옛날처럼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4) 양육사례 청소년 한부모들의 정책 제안

현재 우리사회엔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대부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이고 확장된 사회적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① 사회의 부정적 시각개선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시각이었다. 또한 앞으로 자녀가 자라면서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받을까봐 마음 아파하였다. 이들은 우리사회가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대해주며(모른 척 해주길 바람),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도 자신들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이아빠에게 버림받은 미혼모지만 아이를 열심히 키웠다는 것에 긍지를 갖고 있으며, 사회가 이를 인정해야한다고 진술하였다.

C14. 이게 불행한게 아니라는 인식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저는 제 주위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안 힘들 것 같거든요 ... 왜냐면은 애기 때문에 진짜 의지를 많이 얻게 됐고 예전에는 잘 몰랐던 행복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게 됐고, 오히려 저는 아이덕분에 자신감을 얻는 일이 되게 많거

든요. 그러니까 제 가족이라든지 친구 그담에 사회가 절대로 억지로 선택했다든지 불행한 일이라든지 특히나 저한테 대놓고 아깝다고 얘기하는 ...그런 인식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C18. ... 사회에서도 막 미혼모 자식이다라고 예전에 저 학교 다녔을 때 엄마혼자 키운 애들한테.... 다 물건 훔쳤다고 그러거나 무슨 머...애비 없어서 애가 저 따구라고 그런 말 많이 막 봤었거든요...그런 말 듣고..그래서 그런 편견없이 그냥 다 똑같은 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② 안정된 주거시설 제공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주거제도가 마련되기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임신기간과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중간의 집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았으나,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적절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생하였고, 입소전에도 시설 입소조건에 맞지 않아 방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기랑 집 걱정없이 사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였다.

C16. 아무래도 제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제가 가장 절실 했었어요중략...직장에서 근무..... 4대보험이 있으면 4대보험을 해지한 이후로....3개월 지난 시점에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게 20주였으니까 그 3개월 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중략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

또한 모자가족복지시설이 있다하여도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여 입소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요건이 안되거나 현재 규정의 입소 요건이 안되는 경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주거지원제도를 필요로 하였는데, 임대주택 공급에서 우선순위를 주거나, 경로우대권과 같은 청소년 한부모 우대권을 발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C6. ...아무래도 청소년 한부모라면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정부지원 같은 거 집. 임대주택을 늘려주거나 너무 (신청절차가) 까다롭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거...

C7. 임대주택을 넣어놨는데 안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는 분 댁에 와서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점수제로 들어가잖아요 임대주택 이런것들이 그냥 미혼모 먼저 들어가는 제도가 있었으면... 주택이 있긴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중략....경로우대권과 같은 청소년 한부모 우대권발행(주택, 등등에서)

C21. 모자보호시설 아이나이제한이 없으면.... 시설마다 다다름. (현재 있는 모자원은 14개월) 미혼모만을 위한 혜택이 주어졌으면.....

특히 임신초기 낙태를 중용하는 부모나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청소년 한부모들이 낙태나 입양이 아닌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이들이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과정을 보낼 수 있도록 미혼모자 지원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부모가 낙태나 입양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출산의지를 갖고 양육을 선택하여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C1.부모들의 (출산과 양육)반대가 엄청 심할 수 있기 때문에..시설수급.. 즉, 미혼모 보호시설이 더 확장되어야해요. ...(출산을 하고 월세방을 구해 살고 있는 현재) 지금 당장은요.. 그 주거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지원금 90만원을 받아도 35만원이 집세로 들어가거든요.....청소년 미혼모는 임대주택이 하늘에 별따기라던데.. 그런 임대주택이 아니라 좀 더 모자원처럼중략 ...보장이 되는 그런 주택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청소년 한부모들은 중간의 집이 아닌 편히 오래 지낼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이 확대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기출생신고를 할 때 기재하는 주소나 미혼모와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공동체 시설이 아닌 개인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C20. 원룸이여도 조그만집도 좋으니까 애기랑 같이 살 수있는 곳만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시설에서 사는 거 좀 솔직히 그래요....공동생활이고 .. 애기한테는 안좋은거

같아요. ...부모님들도 연락이 안되고애기랑 엄마 혼자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로 시설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딱했어요... 근데 애기 주소를 딱 줬는데 여기로 옮겼어요.

③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한부모들은 시설이나 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다. 이들은 취업과 연결되는 직업교육의 범주를 확대하고 (C21, C34), 아이엄마를 위한 상담, 재능개발, 양육훈련 등 1 대 1형식의 심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으며(C4, C17) 시설내 진학준비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C1).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했는데, 지자체 지원 무료프로그램의 경우, 미혼모들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보육기관 보육시간의 조절과 질적 서비스 개선

청소년 한부모들은 학업(검정고시나 학교)과 취업을 위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24시간 보육체제로 확대하거나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운영하는 것 등이 필요하며, 월 14시간 지원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해주길 원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하여 아이가 교육적 혜택과 더불어 다른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길 요구하였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교사와 시설장이 청소년 한부모자녀를 배려하고 잘 보육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요구하였다. 한편 미혼모 자치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자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17.직장이 늦게 끝나면 어린이집에서는 눈치를 좀 줘요.... 혼자 키우다 보니
니가 좀 알잡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고..

⑤ 현실적인 수당지급과 의료지원 및 양육물품 지원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전후과정에서 시설에 입소한 경우, 사회적 지원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으나, 퇴소 후, 개인적으로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생활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소 후 가족이나 아이아빠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사회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의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양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들은 현실에 맞는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요구하였다.

“양육수당의 현실화”

월별 양육수당이 아이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20만원에서 5만원) 아이연령이 어릴수록 많이 지급되지만, 연령 별 수혜대상자들 모두 다 양육수당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시 병원비와 기저귀나 분유 등의 아기용품을 지원하는 위기지원비도 연간 60만원에서 70만원씩 지원받았으나, 대부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¹¹⁾.

그 외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하거나, 아기와 함께 엄마가 심리치료를 받거나, 아기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놀러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요구하였다¹²⁾

“취업 소득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직업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아이엄마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기초수급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경우엔 차등지원되는 현행제도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11) C18은 위기지원비로 70만원을 받았으나, 아기가 자주아파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다.

위기지원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를 근거로 여성가족부에서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출산비, 병원진료비, 아기 생필품 구입비(기저귀, 분유, 물티슈 등)를 지원하는 것이며, 각 지역의 건강가정센터나 한부모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센터에서는 24개월 이내 자녀를 둔 미혼부/모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2012년 기준 연간 70만원을 지급하며, 2자녀 이상일 경우, 연간 14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12)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부)모자를 위한 초기위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부)모자의 문화 및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 참여지원을 하고 있으나, 당시 면접대상자는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C17.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부모가족 중지가 됐어요. 소득신고 때문에 지금 회사 급여가 120인데 3달에 한 번씩 상여금 붙어서 나가요. 그럼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160이 되요. 그걸 160으로 신고를 하니깐. 중지가 됐다고 안내전화가 오는 거예요. 2인 가족이라고 해도 회사에 따라서 소득신고가 달라 질수 있잖아요. 그럼 이러니까 안 돼요. 저러니까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너무 화가 나니까. 까다로운 부분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고 . 모 지원이 경제적인 거 2인 가족은 얼마, 3인 가족 얼마라는 부분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솔직히 서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그런 기관에서의 지원이 제 개인적으로 2배정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엄마에 대한 의료지원, 아기 예방접종 선택사항에 대한 무료지원”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기본적인 예방접종 외엔 해당되지 않아 의료비가 너무 비싸게 들고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적절한 처방과 예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들은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엄마의 진료에 대한 의료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아이를 엄마 혼자서 키우며 가족이나 다른 사회적 지원망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의 건강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특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1. .원래 원칙적으로는 돌까지 키우고...그이후로.....(정부에서 취업 권유) ..전화가 오는걸로 알고있어요.. 중략수급자는 의료급여제도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엄마들 복지 이런 거까지 요구하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의료지원..... 엄마는 아예 없거든요..그래서.....

“3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에 대한 양육보장”

한편 현행 양육수당과 지원제도에서는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까지 엄마가 양육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 후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아이의 발달을 고려하여 3세까지 엄마가 양육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C1.애기 금방 키우고 얼른 어린이집 맡기고 일해라 그렇게 종용하지 않고 음.. 보통은 36개월까지가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중략 ..그때까지 많이

라도..물론 최저 생계비...음... (경제적으로 신경을 안쓰고 취업을 하지 않아도)..정도로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미혼모가 내가 원해서 된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 남자는 떠나가고 그렇게 애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혀 도움 받을 데가 없거나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데 당장 .생활비도 안되는 형편이고중략 ...일찍 말기면 애착장애 생기고 애들이 심리적으로도 미쳐가는데....일찍 일찍 말기면.....그게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중략 ...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때 아이를 (엄마가)어느 정도까지는 키우게 해야 예상치 못하게 미혼모가 된 긴급상황에서는 도와줘야한다고 생각을 해요...중략 나라전체로 보면 오히려 손실이 아니라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주고 근로자립 능력을 세워주고 이게 국가경제에..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아이의 정서안정도 미래꿈나무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개선과 절차의 간소화”

면접대상자들은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게 하려면 영유아시기까지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유지해주는 정책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현 제도상 부양의무자가 부모로 되어 있어, 청소년 한 부모가 수급자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청소년 한 부모들이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드물어서, 이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18세미만 청소년 한부모자녀와 손주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길 원했다. C34의 경우,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어 친생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청소년 한부모 대신 친생모가 아이에 대한 수급비를 받게 되었는데, 출소 후에도 엄마가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몹시 불편해 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가 18세미만이거나 소년원에 입소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이들의 부모가 대신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모역할을 거의하지 않았던 친생부모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지원금을 받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한편 C6의 경우는 친아버지와 전혀 교류없이, 아이랑 둘이서 살고 있지만,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수급자에서 제외된 C6은 주거시설이나 양육비 지원에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C1.이런게 있어요..부양의무자로 부모님이 나오면 수급비가 깎여요..그러니까 부

양의무자로 꼭 부모님을 할 게 아니라 ..부모님은 지우라고 그랬는데 내가 애기를 키우기로 결정을 한건데 부모님께 부양의무가 주어 죄송스러운게 있죠....중략너무 바라는 심보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한테까지는 .애기부양의무가 안 쥐어지고지자체나 정부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게 더 좋을꺼 같아요...¹³⁾

C34. ...기초수급자..애기 낳은 사람 둘이 돈을 받잖아요...한달에 한번씩 그..좀..돈도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저희 엄마가 제가 없으니까 애기꺼 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가면 엄마가고집이 엄청 세요...수급 들어온 돈을 엄마한테 해야 된대요.. 전 솔직히 싫거든요...제가 낳은 자식이고 엄마가 낳은 자식 아닌데....제가 그 돈을 받고 그럴 권리가 있잖아.... 어..근데 쯤 쯤 그래 보여요...기초생활수급자는 내 건데 엄마가 가져가니까 그 돈을 달라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애기하기 불편하고...

C6. 수급자를 해주는 거(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너무 까다롭게 이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게 없어요.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도제가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아빠가... 공무원생활을 하시고 재혼을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저를)부양을 해야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 하잖아요. 내가 혼자서 아이랑 사는 데 현재 제일 필요한 지원은 집. 매입임대나 전세임대.1순위가 수급자잖아요. 한부모는 차상위로 들어가고 신희부부 임대 다 밀리는 거예요. 아이가 100일 때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원래는 자취하다가 매입임대라고 해서 아무래도 월세가 저렴하고 방도 2칸이고 해서... 1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4년 이었던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고 하니깐. 차상위계층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밖에 못사는 거예요. 내년이면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무래도 또 그런 게 까다로울 것 같아서...

이와 같이 부모가 있는 18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나 직업을 가진 청소년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의 친부모가 안정된 소득이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에 대한

13) C1은 현재는 물론 임신당시에도 18세이상으로 현재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C1은 수급자로서 지원받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18세미만 청소년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대안을 요구하였다.

③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들 중엔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은 경우도 있었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해 혼자 지낸 경우 정보수집에 더 어두웠는데, 일부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도 시설에서 지원내용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시설에서 시설내 지원외에 시설외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해줄 필요가 있으며, 시설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재가인 경우 인터넷이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다.

C10. 시설에 있으면 예전엔 정부지원 따로 못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새로 생겨서 한달에 5만원 받아요.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야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시설에서) 정책 설명회 해 줬으면

④ 한부모 공동체 생활 마련

한편 청소년 한부모 중엔 한부모가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C5. 음~~ 그냥 예전에 그 한부모 언니들이랑 만난적이 있어요 그 언니들이랑 했던 애긴데어느 한지역을 한부모들만 살 수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누구는 어린이 집교사 누구는 학원강사 누구는 돈갖고? 다 정해가지고 저희들끼리만 편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 지금은 다들 그러는데, 시설들이나 이렇게 두려워서.....제일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⑤ 제도적으로 아이아빠에게 양육 책임 부여

청소년한모들 중 일부는 아이아빠와 교류를 원하지는 않지만 아이아빠가 양육비와 같은 양육책임은

저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책임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C7. 아기가빠에게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아빠들 교육시켜야 해요.

C16. 입양가정한테만 너무 신경쓰지말고 우리 미혼모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미혼모에게 너무 까다롭게 법적제한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미혼부한테는 제한이 없거든요 (어~) 미혼부한테도 적절하게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라도 지워줬으면 좋겠어요중략...외국에서는 아빠가 양육비 더 내야 되고 세금도 일반사람보다 좀 더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대요 우리사회는 솔직히 미혼모가 많이 늘 어날 사회예요 남자에게 너무 좋은 세상이예요 왜냐면 자기가 사고 쳐도 어치피 뭐 책임만 안지면 그만이에요 내애 아니다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여자는 임신과정에서 부터 출산에서부터 애기키우는 거부터 애기 키우고 나서 혼자 키우고 나서 양육비를 벌어야 된다는 ... 여자혼자 책임질게 너무 많잖아요 또 얼마나 사회가 까다로워요 미혼모라 ... (부정적인)시선으로 보고 그래서 좀 남자한테도 법적인 책임을 많이 물렸으면 좋겠어요

⑥ 자산형성계좌제도의 부활

한편 C18의 경우는 2010년도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자산형성계좌지원 계좌 운영사업을 다시 부활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제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구(만25세미만까지)의 본인적립금에 대한 1:1매칭 지원(월 20만원이내)제도로써, 최장 5년간까지 지원 적립 후, 적립금 전액 지급하고, 적립금은 지원가구의 주택구입임대, 본인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0년 4월에 시작되어 2015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도이나, 2012년부터 신규폐지에 따라 현재 2010년도 지원자에 한해 진행되고 있다. C18은 2010년 당시 엔 아이아빠와 함께 살고 있어서 신청을 못했는데, 이 제도가 다시 부활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였다.

⑦ 더 이상 바랄게 없음 - 현재의 지원제도와 정책에 만족

한편 현재 임신중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과 양육을 할 예정인 C23과 C27은 필요한 모든 것이 시설에서 제공되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진술하였고, 출산 후 재가양육을 하고 있는 C12의 경우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19세 미만으로, 현재의 지원제도와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있었다.

C12. 현재 만족, 양육수당, 기저귀분유제공, 어린이집 공짜, 시설제공 등 필요한 것은 다해주고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게 없어요..... 주변시설만 개선되길 바라 ... 우리는 이상한 사람 아님.....

2. 입양보낸(혹은 입양을 계획 중인) 사례를¹⁴⁾ 통한 청소년 한부모 경험 실태

1) 임신배경과 인지과정

(1) 임신 배경

입양사례에서 두 명(C28, C29)을 제외한 8명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당시 가출하여 친구 집에서 지냈거나(C3, C24, C25, C26),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거나(C30, C33, C35) 남자친구와 동거하며(C32)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남자친구와 어찌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가출이나 자취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할 때 성관계를 갖고, 임신에 대한 사전 대비 없이 임신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중 남자친구랑 진심으로 사랑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경우는 단 한 사례였으며, 나머지는 그냥 사귀다가 열떨결에(C3, C24, C26, C30), 술먹고 아는 오빠와 어찌다가(C25),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다가(C28, C35), 처음 관계를 갖다가(C29)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중 C26의 경우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성관계를 가져 임신이 되었는데, 당시 C26의 나이는 15살이고 아이아빠의

14) 본 연구에서 청소년 한 부모가 입양을 보낸(보낼, 이하 '보낸'으로 통일) 사례는 모두 10사례이며 이 중 이미 입양을 보낸 경우는 5사례 (C24, C30, C32, C33, C35) 이고, 현재 앞으로 입양을 보낼 사례는 5사례(C3, C25, C26, C28, C29)였다. 이들 중 현재 임신 중인 사례는 4 건이고*, 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내는 경우는 1사례였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9명 중 5명은 모자복지시설에서 지내고, 나머지 4명(C30, C32, C33, C35)은 산업정보학교(소년원)에서 지냈다. 한편 입양을 보낸(보낼) 10명의 청소년 한부모 중 19세 이상은 1명이었고, 19세 미만은 9명이었다.

* C32의 경우, 현재 세 번째 임신 중으로 이전에 2번의 임신경험에서 첫째는 낙태, 둘째는 입양을 보낸 경우이다. 본 조사에서는 입양을 보낸 경험에 대하여 면접을 하였다(출산후 입양보낸사례로 분류).

나이는 26살이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임신이나 피임에 대한 지식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29는 남친과의 첫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가능성이나 피임에 대해선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C26도 임신의 가능성이나 두려움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였다. C28의 경우도 남자친구랑 같이 있다보니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피임에 대해선 콘돔밖에 몰랐으며, 여러번 성관계를 가지면서 잘 안 챙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28. (임신에 대한 두려움)있었어요. 있었는데 조심은 안했었어요. 몰랐어요. 피임은 그냥 콘돔밖에 몰랐고,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몰랐고. 근데 처음에는 잘 챙기다가 시간 지나니까 잘 안챙기게 되고...

(2) 임신 사실에 대한 인지 및 당시 심정

입양사례에서 청소년 한 부모들은 처음에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임신사실을 안 후엔 몹시 당황한 것으로 나타났다. C25, C26, C28을 제외하곤 임신당시 모두 중학생 연령이었는데, 이들은 자신 앞에 나타난 현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다. C26의 경우는 당시 일터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기에 난감하고 앞탈이 캄캄했다고 하였다. 일부는 생리를 5-6개월 동안 하지 않고, 몸이 점차 불어나는 동안에도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C29, C30, C35), 이들은 주변 친구나 선생님과 부모님이 먼저 인지해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살이 찌서 임신을 확인하게 된 사례의 경우, 처음엔 스트레스로 살찌는 줄 알았다가 이상해서 병원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C30, C35), C30은 태아가 쌍둥이라서 더 놀라고 막막했다고 하였다. 또한 입덧이 심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C28의 경우는 처음에 임신사실이 믿기지 않아 꿈이기를 바랬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놀라 아무생각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당시 부모와 동거하던 C25의 경우는 임신사실을 알고 난후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낙태할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C29. 생리안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친구를 통해 선생님과 어머니께 먼저 알려져서 확인하게 너무 놀라서 아무생각도 안 들었어요.....

반면, 임신사실을 안 후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사진을 보고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게 신기했다는 반응도 있었고(C3, C33), 그냥 무덤덤했다는 반응도 있었다(C35).

(3) 임신사실에 대한 고지 및 주변 반응

입양사례에서도 청소년 한부모들은 C25를 제외하고 임신사실을 맨 먼저 아이아빠에게 알렸으며, 처음엔 가족과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양보낸 사례에서 C28과 C29를 제외하곤(현재 임신 중, 시설입소), 모두 아이아빠와 헤어진 상태인데, C24 와 C26은 본인이 임신사실을 알기 전에 헤어졌고, C3은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에 헤어졌으며, 4명은(C30, C32, C33, C35)은 출산 후에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보낸 사례에서도 아이아빠들은 임신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한 6 사례 중 두 사례는 처음에 임신사실을 알고 난후 난색을 표하며 낙태를 권유하거나 책임을 피하였고(C26, C30), C33 과 C35 는 처음엔 낳아서 같이 키우기로 하였으나 후에 헤어졌으며, C32의 경우는 당사자들은 결혼하고 같이 키우려고 하였으나, 아이아빠부모님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입양을 보낸 경우였다.

C32. ...두 번째 임신...애기아빠...일단 애기 낳자. 결혼도..... 하지만 내가 어려서 혼인신고가 불가능했고..... 가족에겐 처음에 알리지 못하고 출산 후 알림..... 둘 다 나와 살다가 출산 후 (내가)집에 돌아가게 되고...우린 결혼을 원했으나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로 (애기아빠가 군대 간 사이) 아이를 입양 보냄

또한 이들은 대부분 부모나 친구에게 임신사실을 처음엔 알리지 못하고 만삭이 되어 알리거나(C30), 혹은 출산 후에 알리거나(C32) 현재까지 알리지 않은 경우도(C24, C33) 있었다. 임신사실을 알게 된 부모나 가족들은 대부분 앞날을 걱정하며 처음엔 낙태나 입양을 보낼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임신 중으로 앞으로 입양을 보낼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도, C25외, 모두 아이아빠에게 가장 먼저 임신사실을 알렸는데, 아이아빠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아기를 낳자고 한 경우(C3), 처음엔 놀랐으나 책임을 지려한 경우(C29), 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책임을 피하려는 경우(C28) 등이 있었다. 가족들은 놀라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4) 낙태와 출산사이에서의 갈등과 선택

입양을 보낸(보낼)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이 처음에 낙태를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을 한 경우나, 임신 중인 경우나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이들 중엔 임신사실을 너무 늦게 알거나 혹은 대처를 빨리 못해 병원에서 낙태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c24, C25, c26, C29, C32), 이 들은 대체로 연령이 어리거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기반이 열악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낙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낙태는 일단 하지 않기로 한 경우(C30, C35)와 낙태를 하려다 초음파 사진을 보고 마음을 바꾸된 경우 (C28) 도 있었으며, 처음엔 낳고 키우려는 마음에서 출산을 한 경우도 있었다(C3, C33)

C28. (낙태 생각했으나 초음파를 보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잔인하게 느껴짐) 저도 처음에는 ‘아 그냥 애 지우면 되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지잖아요. 일단 사진도 봤고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병원을 알아봤어요. 불법이긴 한데 찾았어요. 찾았는데 제가 가보니까(엄마에게 그냥 병원이)없다고 했어요.

2) 임신기간과 출산과정

(1)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의 어려움

입양보낸 사례에서 면접대상자들은 혼자서 혹은 아이아빠와 둘이서 임신과 출산과정을 보낸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주변의 시선이 무서웠으며, 가족이나 주변과 연락이 두절된 채, 임신기간을 보내고 아기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지지기반이 없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며, 필요한 병원진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33. ..학생이기에 모든 게 두렵고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도 몰랐다.... 친 언니가 병원 다닐 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이 힘들었고....., 전부터 혼자 살아서 심리적 지지기반이 없는 것이 힘들었다.....(친구가 시설에 들어갈 것을 권유 함)

C32. 애기아빠와 부모님 모르게 외딴 곳에서 전화도 없이 살아서 국가의 지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병원진료도 임신 중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집에서 애기아빠와 둘이 낳아..... 미혼모 시설에 갈까 했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고...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됨..... 현재 임신 중인데 첫째아이를 부모님이 입양보낸 것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태이다.....지금 소년원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태교가 걱정되고..... 소년원을 나가서 임신 중인데 (아기를 키우기 위한)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다.....

C24.열린집은 임신 5개월 때 들어오고 ... 출산은혼자했죠.....진통이 너무 힘들었고.....산후조리는 제대로 못했어요 애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왔다갔다 해야되고 애기보러 왔다갔다 해야되고출산비용은 열린집에서 내주셨어요.....열린집에서 해준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한편 입양을 보낼 예정인 면접대상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변의 시선이 무서웠고, 출산을 앞두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 수 없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역시 주변에 지지 기반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며,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지원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3는 친구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그 외엔 시설에 입소한 상태이며, C26은 출산 후 시설에서 입양숙려제도에 의해 7일간 아이를 양육하였는데, 입양보내는 것을 앞두고

입양숙려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C3. 혼자서 출산하고 조리해야하는 상황이라 나라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

C25. 배나오는 것 때문에 학교가기가 힘들었다.... 집에서 알까봐 임신했을 때 거의 밖에서 지냈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C28. 병원에 갔을 때 사람들의 (좋지 않은)시선과 임신기간 동안 배를 감춰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 입덧으로 밥을 거의 못 먹을 때 어머니가 챙겨주시고... 낮에 혼자 있을 때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님, 입양 보내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심한 우울증이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힘들다.... 임신기간 동안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것이 힘들었고...

C26. 내가 힘든 것은 딱히 없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무엇보다 ... 지금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2) 입양보내기와 양육 사이에서의 갈등과 선택

입양 보낸 사례에서는, 나이가 어리고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되어 입양을 보내거나(C3, C25, C26, C24, C35)부모의 반대로 입양을 보내거나(C30, C35)혹은 처음엔 아이아빠와 함께 키우려고 했지만 도중에 아이아빠와 헤어지게 되어 입양을 보내게 된 경우(C33)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입양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팠으며, 이 중에는 결정 후에 마음이 바뀌어 찾아오려했지만 이미 입양을 간 후라 돌이킬 수 없게 된 경우도(C30) 있었다. 또한 아이아빠가 군대에 가고 아이엄마가 소년원에 들어온 사이 양쪽부모들이 입양을 보내버린 경우도 있었다(C32). 이들은 지금도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고통스러워했는데,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입양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안타까워한 경우(C33)도 있었다. 한편, 이들 중 입양숙려제도를 경험한 사례의 경우, 입양숙려제도가 입양보내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고 진술하였다.

C24. 아기를 책임지기에 나이도 어리고 가정형편상 어려워..... 입양숙려제도가 입양 보내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

C33. 애기아빠와 동의하여 키울 마음으로 낳았다가, 출산 후 애기아빠가 갑자기 술 담배를 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입양을 결정하였다..... 학생이기에 혼자서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지만 지금은 지원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있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 애기를 낳고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힘들다....

한편, 앞으로 입양을 보낼 결심을 한 사례들은 학생신분으로 경제능력도 없고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입양을 보내려고 하며(C3, C26), 아이아빠도 없고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입양을 보내려고 하였다(C25).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하여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키울 수는 있지만, 입양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제대로 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입양을 보내려는 경우도 있었다(C28, C29).

C28. (시설에 와서 혼란)직접 키울 수 있는데 내가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하지만 학생이고 아무것도 못해줄 것 같고, 우리 엄마아빠가 키워야 해서 그것도 미안하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애기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커서 행복한 게 나을 것 같음. 애기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애기 보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힘들어 보임.... 우리 가족은 양육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으나 애기아빠와 그 가족들은 입양 권유...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여서 해외로 입양 갔으면 하기도 함..... 입양이 무조건 매정한 선택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또한 이들은 모두 입양숙려제도의 적용을 받아 앞으로 아기를 출산하면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고 7일동안 양육을 한 후 입양을 보내게 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친생모 호적에 올리고 7일 동안 양육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C26. .. 솔직히 저는 입양보내려고 여기를 들어 온건데 법이 바뀌었잖아요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호적에 올려야되는거 때문에 엄마호적에 꼭 올려야되고 그리고 친아빠쪽에도 올려야되는데..... 저만 올라가면 억울하잖아요 ... 솔직히 입양숙려제도라고해서 7일동안 키우는 것도 좀 그런데 병원에서 3일 있고 그리고 4일을 여기와서 있는 거잖아요.. 4일동안 애기를 키워도 정이 금방드는데 ...호적에 올리는것도 마음에 안들고.. 지금 애기를 데리고 7일동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힘들고 저보다 먼저 간 사람들도 다 거쳐 지나갔으니까요제가 여기서 선생님들 대신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입양보내고서 우는 애들도 참 많고 ...나라에서 그거잖아요 입양보내지말고 그냥 키우라는 식으로 밖에는 안들려요 저희한테 그럴거면은 미혼모 시설 자체가 왜있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3) 입양보내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적응과정

(1) 입양보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입양을 보낸 사례나 입양을 보낼 사례의 경우, 대부분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출산과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가족이나 주변에 지지기반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 낙태를 한번쯤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시기를 놓치거나 죄책감 때문에 혹은 아이아빠의 약속을 믿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혹은 출산예정이고), 아이아빠의 변심이나 나이가 너무 어려 키울 여건이 안되어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한 경우였다. 이들 중에는 아이아빠의 부모나(C30), 양가부모가 당사자들 몰래 협의하여 (C32)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보내거나, 산부인과에서 입양기관을 소개하여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C24, C35).

① 입양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부모동의 절차의 부담함”

18세미만의 경우 입양을 보낼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자신이 입양을 보내려고 할 때 부모가 연락이 안되거나 동의하지 않아서 힘든 경우도 있었고(C35), 반대로 자신은 아이를 키우고

싶었으나 양가부모들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하여 입양을 보내서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다(C32). 이들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제도 때문에 힘들어하였는데, C35는 청소년 한부모도 부모 동의 없이 결정권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C32는 부모도 반드시 자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시행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입양숙려제도로 인한 고통”

이 제도에 적용된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가 자신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호소하였다(C25, C26, C28, C29). 이들은 자신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이미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7일간 아이를 양육하게 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만 더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특히 아기를 친생모 앞으로 출생신고 하는 것을 곤혹스러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기를 돌보는 것은 좋으나 엄마호적에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C25, C29)과 여자에게만 불리한 제도라는 입장(C26)이 있었다. 또한 입양숙려제도로 인해 법이 시행되기 전(2012년 8월) 아기를 낳기 위해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한 사람도 있으며, 애를 낳아서 입양 보내려다 낙태를 하거나 아기를 밖에서 낳아서 버리는 사람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였다(C26, C28).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아기를 키우다 보면 (마음)보내기가 힘들어질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 입양을 보낼 때,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을 염려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입양숙려제도를 경험하면서 입양보내는 것에 대해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친생모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간 아이가 양부모의 호적에 올라가는 기간도 더디게 만들어, 아이와 양부모가족에게도 불편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하루빨리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입양이 늦어져서 아이가 입양기관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였다.

“더 까다로워진 해외입양절차”

면접 대상자들 중 일부는 새로 바뀐 입양특례법의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서 자신의 아이가 입양기관에 간 후 바로 입양되지 않고 오래 기다리면서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하였다. 또한 이런 경우 오히려 해외입양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해외입양을 바라는데, 이 역시 현제도가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C28. 애를 입양해 가는 사람들도 그 아이를 (바로) 친자식으로 못 올려요.....저는... 해외로 간 애들이.... 더 당당하고 많이 웃고 내가 못가본 데도 많이 가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잘살고, 여러 명 입양해서 혼자 고립되는 느낌 안들게, 그러면서 개방적이고..... 외국으로 가서 되게 당당하게 살고 외국 엄마들도 진짜 자기자식처럼 안고 있고그게 되게 좋아보였어요.....해외에서는 또 친부모 찾는 걸 많이 도와준다고.....어차피 호적에 남을 거,어차피 친자식으로 못키울 거 그냥 해외쪽으로 가서 그렇게 개방적으로 사는 게 더 낫고....근데 이번에 법 때문에 일차 국내로 시도하고 안 되면 해외로. 그리고 또 호적이 애기를 국내로 입양하면 1년 지나면 지워진대요,그 기록이. 해외로 가면 4년 걸린다고., 지워지는데.

“입양보낸 후 슬픔에 대한 걱정”

입양을 보낼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들은 입양보내기로 결정한 후에, 입양을 보내고 난후의 슬픔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하였다. C29는 입양 보내는 것이 걱정되고 슬프며, 아기가 바로 입양이 안 되면 보고 싶어서 계속 보러 갈까봐 두렵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다. C28도 입양을 보내면 많이 슬플 것이고, 입양보내기로 한 결정을 가끔 후회하고 있으며, 나중에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가 둘째여도 첫째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싫다고 하였다. 또한 복잡한 입양절차 때문에 아기가 빨리 입양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되고, 입양된 후 아기가 적응을 잘 못할까봐 걱정되며, 한국가정에 입양간 아이보다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여 해외로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입양숙려제도의 적응을 받는 사람들로써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과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었다.

② 입양보내고 난 후 겪는 어려움

입양 보낸 사례의 경우, 입양을 보내고 나서 모두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길에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괴롭고 마음 아프다고 하였다. C30의 경우엔, 입양 보낸다고 하고 이틀 후에 다시 찾으러 갔으나 이미 입양을 간 상태여서 슬펐으며, C32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양 보내게 된 것이 너무 미안했고, 아이가 나중에 원망하며 찾아올까봐 두렵다고도 하였다. C35는 현재 (아이아빠가)둘째를

키우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입양을 보낸 아이가 가끔 생각난다고 하였다. 이들은 현재 직업기술을 배우는 등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힘든 마음을 극복해나가고 있었는데, 특히 소년원에 있는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나중에 아이가 찾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미용기술을 배우며 힘든 마음을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C33. ..아직까지는 머릿속에 (아기낳고 입양보낸거)누가 알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슬프잖아요. 우울해지고 다운되고그래서 일단은 그냥 나 혼자만 마음 다스릴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지금도 편지도 쓰고 싶고 사진도 보고 싶고 그런데 너무 미안하고 만약에 (아이가) 저를 찾으러 왔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아이가 얼마나 슬플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있을 때 찾아오면 덜 슬프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미용을 배우며 힘든 것을 극복해나가고 있어요

③ 어떤 상황이라면 입양을 보내지 않았을까(낳겠는가)?

입양을 보낸 면접 대상자들은 만일 아이아빠의 부모님이 반대만 안했거나(C30), 양쪽 부모님들끼리 멋대로 입양을 보내지 않았다면(C32), 입양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아기아빠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성실하고(C33),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오래 함께 살 수 있었다면 (C35) 아이를 입양을 보내지 않고 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들을 미리 알고 양육에 대한 지식과 계획이 있었다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하였다(C33).

C33. ... 어떤 게 있다는 대책(사회적지원)을 알았다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친구 성격 때문이기도 했겠지만근데 우리 언니를 보니까.(사회적 지원) 계획이 일일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언니처럼만 했더라면 애 아빠가 미워도 포기는 안했을 꺼다란 생각을 했어요.

현재 입양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아기아빠가 같이 살고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입양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진술하였다(C3, C25, C26, C28, C29, C33, C35). 또한 나이는 어리지만 엄마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키울 수 있을 것 같고(C29) 학생이기 때문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며(C33) 사회적 지원이 늘어 경제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고 (C26,

C28) 한부모가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이 사라진다면(C26, C29)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키우겠다고 진술했다.

(3) 입양 보낸(보내기로 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입양을 보내거나 앞으로 입양을 보낼 사례에서 면접대상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나타내었다. 대부분 평가에 대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특히 앞으로 입양을 보낼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입양을 보낸 사례 중에서는 다시 데려오고 싶고 (C30), 보내고 싶지 않았으며(C32),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한편 C28의 경우는 앞으로 입양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아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입양보내기로 한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4) 앞으로의 계획

현재 입양을 보낸(혹은 앞으로 입양을 보낼)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양육을 하고 있는 사례에 비해서, 대체로 자존감이 낮았고,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무거운 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이들은 장차 아기가 커서 부모를 찾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① 아이아빠와의 교류

현재 입양을 보냈거나 입양 보낼 예정인 10사례 중 아이아빠와 계속 교류를 해온 경우는 2사례이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진술한 경우는 한 사례 뿐이었다. 나머지는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아이아빠와 헤어졌는데, 대부분의 아이아빠들은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아이 엄마에게 낙태를 권했고, 처음엔 출산을 원했던 경우에도 막상 출산 후엔 도망가거나 책임을 회피하였다.

“더 이상 교류하고 싶지 않아”

입양을 보낸 5 사례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아빠와 모두 헤어진 상태였다. 이 중 세 사례(C24, C30, C35)는 아이아빠와 전혀 교류가 없었고 관계도 좋지 않으며, 앞으로도 교류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C32의 경우는 비록 헤어졌지만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남아 지내기로 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C33의 경우는 출산 후 헤어진 상태에서 가끔 아이아빠가 연락을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C33이 피하고 있는 상태였다.

앞으로 입양을 보낼 예정인 사례의 경우에는 C3을 제외하곤 모두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중 C28, C29를 제외하곤 아이아빠와 헤어진 상태였다. C3은 현재 중학생이며 아이아빠도 어린나이에 임신당시엔 아이아빠동의하에 출산을 하기로 하였으나 지금은 헤어진 상태였다.

아이아빠와 교류를 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책임감 없고 형식적인 교류를 할 경우, 청소년 한부모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아이아빠가 일주일에 한번 그냥 의무적으로 시설에 찾아오고, 그 가족들은 여자 탓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C28의 경우, 아기를 출산하고 입양을 보내고 나면 아이아빠와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교류는 원치 않으나 책임있는 행동 해주길 원해”

C26은 아이아빠와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아이아빠가 책임을 회피하고 떠난 경우인데, C26은 아이아빠가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요구하였다.

C26. 아기 아빠요? 무책임하게 좀 만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말고 잔사람이 없는데 내 애기 맞어? 이러면서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경 안쓰는 사람들 그런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만 완전 나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 다 있는거 같아요 너무 무책임하게 회피하는거 같아요잘못은 똑같이 저질렀는데왜 여자쪽만 상처를 받아야되는지 솔직히 나라에서도 자기 자식들이 오히려 이런 일을 겪었으면 오히려 묻으려고 하고 돈을 더줘서라고 애 지울려고 할텐데 이거는 진짜 아닌거 같아요 당해봐야지 알거 같아요

“진정성 있는 교류는 유지하고파 ...”

한편 C29는 비록 아이아빠의 가족이 낙태를 권유했다가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지만, 아이아빠가 일을 쉬는 날 시설에 찾아오고, 힘들 때 아기아빠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였다.

② 아기에 대한 소망

면접대상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아이를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좋은 양부모를 만나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길 바랐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길 바랐고,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였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했고, 특히 엄마 아빠를 닮지 말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라주길 소망하였다.

한편 C30은 아기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기도 하였다.

③ 자신에 대한 계획

면접대상자들은 앞으로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하여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고, 취업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 시설에 있는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입소기간동안 제공되는 검정고시 대비, 미용기술 자격증, 네일아트자격증, 텔레마케팅 자격증, 컴퓨터 등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하여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모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C33. 소년원 안에 있는 동안 미용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미용분야로 나가고 싶어요.. 네일아트 필기시험 준비중이고.....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싶으나 밖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원 안에 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밖에서는 못 배우는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앞으로 네일아트 샵이 있는 미용실을 갖고 싶고.... 미용에 자리를 잡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리본공예를 배우고 싶어요.....

C32. 텔레마케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소년원에서 일찍 나가게 되면 일자리 구해서 돈을 모으려고 해요.....

한편 현재 임신 중인 사례인 경우, 아이를 입양보낸 후 복학을 하고 싶고 (C25), 특별히 계획은 없으나 옛날부터 사회복지나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유치원 원장님인 어머니께 배우고 싶다는 사례도 있었다(C35). 또한 미용에 관련된 일을 배워서 일하고 싶고, 아기를 잘 낳아 좋은 가정에 보내고 싶으며 (C29),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잘 살아서 나중에 아이가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게 지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하였다(C28).

C28. 몸조리 후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중에 아이가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게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잘 살고 싶어요.....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4) 입양보낸(보낼)사례 청소년 한 부모들의 정책제안

입양을 보내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과 출산 및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하였다. 이들 또한 무엇보다도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를 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개선되어야 하며, 아이아빠에게도 제도적으로 임신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입양숙려제도가 개선되어 입양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사회의 부정적 시각 개선

이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사회가 청소년 한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하며, 청소년 한부모를 편견없이 바라보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때문에, 청소년 한부모들이 양육을 꺼리고 입양을 보내게 되며,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시각이 입양을 간 아이들도 사회적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된 생활을 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② 입양숙려제도의 개선

면접대상자들은 2012년 8월 이후 시행된 입양숙려제도가 입양을 보내는 청소년 한부모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아기를 친생모 앞으로 출생신고 하는 것을 곤혹스러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기를 돌보는 것은 좋으나 엄마호적에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여자에게만 불리한 제도라는 입장이 있었다. 또한 입양숙려제도로 인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증가할 것을 염려하였는데, 낙태나 영아 유기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또한 입양을 보내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입양숙려제도는 이들을 심리적으로 더 힘들게 하고, 입양을 보내고 난 후 더 큰 죄책감을 갖게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③ 부모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법 제정

면접대상자들은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원인이 아이아빠들의 임신과 양육에 대한 책임회피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아이아빠가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아기를 갖고 서로 상의하여 낳기로 했으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을 함께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러한 법이 있어야 남자들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강해져서, 엄마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나 아기를 입양보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C33. .. 제일 큰 문제는 남자 남자 쪽이 안변하고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입양 보내는 일) 생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솔직히 여자잖아요.10대의 상처가 죽을 때까지 갈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여자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서로 상의를 하고 낳겠다고 결정을 했으면....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 늙을 때까지 애를 키워서 같이 살아야한다는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중간에 남자가 빠져나가 버리면 여자만 힘들잖아요. 도망갈 수 없게 딱 잡고 있는 법.평생 책임질 수 있게그런 법이 있어야.... 남자들이 이런 일을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고...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솔직히 경제 같은 거는 서로 힘들어도 일하고 해결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없으면 여자 혼자서 일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솔직히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법이 필요해요.....

④ 청소년만을 위한 산부인과 운영

면접대상자들은 청소년만을 위한 산부인과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고 일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어린아이가 임신을 한 것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진료 받기가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만을 위한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C29. 나이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가는 병원. 그냥 산부인과를 가면 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결혼을 하고. 근데 나이가 어린 저가 가면, 나이가 어리다고 간호사들도 무시하고 의사들도 무시한단 말이에요. 청소년만을 위한 산부인과가 따로 있어서, 산모들을 더욱 배려해주고 병원비 부담도 덜어주었으면 좋겠어요...

⑤ 청소년자녀의 아기를 입양보낼시 부모와 청소년자녀간 동의절차 개선

면접대상자들은 미성년자녀가 아기를 낳고 입양을 보낼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힘들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 한부모들 중 가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들이 아기를 입양보내려 할 때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을 했을 때 부모가 낙태를 권유하거나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때로는 청소년자녀 몰래 아기를 입양을 보내기도 한다. 청소년부모 몰래 양가의 부모들이 협의하여 입양을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면접대상자들은 부모가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자녀의 아기를 입양보낼 때는 반드시 아기의 부모인 미성년청소년자녀의 동의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32).

⑥ 아픈 아기에 대한 의료지원

면접대상자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의 아기에 대한 의료지원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진료 외에 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까지 확대되어야하며, 시설 내에서 입양을 가는 아기와 가지 않는 아기를 차별하여 진료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은 임신과 출산 및 초기 양육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진료에 국한되는데, 면접대상자들은 아기가 아파 수술이나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때에도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⑦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입양사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처지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아기를 낳거나, 혹은 집안에서 임신과 출산 및 입양 보낼

때 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원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3은 임신중이고 입양을 보낼 예정인데, 현재 집에서 지내면서 사회적 지원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C33의 경우는 입양을 보내고 나서 사회적 지원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C33은 사회적 지원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입양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지원내용에 대한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다.

⑧ 청소년 한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청소년 한부모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자잘하게 도와줘서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며, 따로 기관에 가서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 전에 고운 맘 카드만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나라에서 지원하는 유치원(어린이집)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내기가 힘드므로 더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법을 바꿀 때에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정하기를 요구하였다(C28).

Ⅲ.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방향에서 고려해야할 점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면접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과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는 임신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당시 대부분 가출이나 자취나 남친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피임이나 임신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성관계를 가졌으며, 임신 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접대상자들은 처음에 임신사실을 알고 몹시 당황하였고, 남친과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아이아빠들은 대부분 낙태를 권하거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면접대상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안겨주었다. 35사례 중 28 사례가 임신 혹은 출산 후 헤어졌으며, 이 중에는 임신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헤어진 경우도

있었다. 가족이나 주변에서도 대부분 낙태를 권유하거나, 방치하였다.

둘째, 낙태와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정에서는 양육사례의 경우 처음부터 출산을 결심한 경우가 많았으나, 입양사례에서는 처음에 낙태를 고려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양육과 입양 보내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과정에서도 양육사례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흔들림 없이 양육을 선택하였으나, 입양을 보내기로 한 청소년들은 마지막까지 갈등하며 마음의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사례와 입양사례의 개인 내외적인 심리적 자원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양육사례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의 고통 중 가장 큰 것은 아이아빠의 배신과 헤어짐 및 아이아빠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아이가 크면서 경험하고 있는 아빠의 빈자리에 대한 슬픔을 가장 가슴아파하였다. 그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들은 주거문제와 생활비 문제 등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입소의 경우, 임신과 출산 및 초기양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대부분 아기를 키우는데 있어서 충분하고 만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소 후 재가 양육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주거와 의료비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을 우선 배려한 임대주택제도마련과 엄마와 아이모두를 위한 의료지원을 요구하였고, 현실을 반영한 양육수당을 지급해주길 요구하였다. 또한 아이아빠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를 확립하고, 18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양육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시각과 열악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양육을 선택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기가 곧 삶의 활력소이며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의 시각과 입양숙려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이와는 다르게 입양을 보낸(보낼)사례에서는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대부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대부분 두려워하였고, 주변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원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찾는데 제약이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입양사례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사회적 지원내용을 잘 알지 못했으며, 지원내용을 검색하고 신청하는 데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입양을 보낼 예정인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시설에 입소하여 산전산후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해하고 있었다. 한편 입양사례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컸고,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느끼지 못했으며, 특히 입양숙려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례의 경우,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이미 입양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입양숙려 제도는 고통만 줄 뿐이며, 특히 여자에게 불리하고, 입양을 가는 아기에게도 입양을 지연시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입양을 보낼 때 미성년자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부모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반대로 부모가 마음대로 손주를 입양보낼 수 없도록 미성년자 자녀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입양사례청소년 한부모들은 입양숙려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아이아빠의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의제정과 청소년만을 위한 산부인과 병원 운영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추후 논의를 필요로 한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가 발생하는 이유는 열악한 가정환경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점이다. 본 면접에서 청소년들은 임신당시 대부분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자취를 하거나 친구집에서 지내거나 가출을 한 상태였다. 집에서 지내는 경우도 부모가 자주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주거가 불안정하고 부모가 부모역할을 거의 하지 못할 때 청소년자녀는 이성친구와 함께 어울리며 성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 현재 재가 양육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가족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아이와 둘이서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그들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부모 또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사례에서 가족의 지지적 환경이 청소년 한부모들로 하여금 심리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도록 이끌어주었다는 진술은 가정기능의 회복이 청소년 한부모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치료방안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예방과 극복방안은 우리사회 가정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확립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원 방안마련이 시급하며, 다각도로 마련되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제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엔 물리적 고통과 더불어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방안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시각개선, 가정의 기능회복,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안되어 입양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혹은 보낸 경우), 양육사례에 비해 사회적으로 심리적 지지기반이 열악함은 물론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자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방안은 양육사례와 구별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현제도하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책임과 입양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이 현실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면접 결과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모여서, 청소년 한부모가 직접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고, 부모가 대신 수급자로 지정되는데, 일부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는 수급비를 부모 마음대로 쓰고 아기의 부모인 엄마에게는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건전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동안 부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의도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수급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무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자녀가 양육을 원할 때에도 부모마음대로 아기를 입양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8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이들의 친부모가 부모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가정이 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넷째, 청소년 한부모들이 일을 할 때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자녀가 1살이 지나면 청소년 한 부모들에게 취업을 권하고 있으나, 이들이 취업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 지원은 점차 줄어든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취업과 양육과정 모두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자립적으로 자녀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한다. 더불어 일(혹은 학업)을 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지원제도를 모색하여 일과 양육의 양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한다.

다섯째,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엇갈린 반응은 이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입양숙려제도는 선택귀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입양을 보내려는 청소년들에게 고통을 배로 주는 악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아이아빠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입양숙려제도는 엄마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되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입양숙려제도로 인해, 입양을 보내려고 하기 보다는 낙태와 유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며 결코 간과되어선 안 될 것이다.

발제 2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김 지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1)

I. 들어가며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범주와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母 혹은 父’로 정의된다(제4조 제1항의 2). 최근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로 청소년 한부모 가구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지원 첫 해 지원가구는 1,222가구였으며, 2011년에는 1,620가구로 소폭 증가하였다.

청소년 한부모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민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중등학교 재학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과 19세 이상 성년에 이르러 성인기에 접어든 청소년이 혼재하고, 심지어 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자인 ‘아동’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가 학업중단, 가출, 가정 해체, 빈곤 상황에 있는 취약위기청소년이며 인권, 기본권 보장에 있어 취약성이 노출된 소수자(minority)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임신, 출산(낙태 포함), 자녀양육 전반에서 이들의 인권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국가 통계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자녀 출산이 합법적 혼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혈연관계에 기반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사회규범을 벗어난 일탈행위, 지위비행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각 국가의

1) 이 발표문은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과제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와 2013년 현재 집필 중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의 일부 내용에 대한 발췌요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용 시 반드시 원 보고서를 직접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중 청소년(12~24세)의 ‘혼외자 및 미상’ 출산 건수를 분석한 결과 혼외자는 매년 1천명에서 1천 700여 명, 미상은 매년 9백 여 명에서 1천 500여 명에 달하였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의 분만 건수는 매년 2만 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는 전체 분만 건수의 5~6%에 달하는 규모이다(통계청, 2011).

청소년 임신·출산에 대한 시각은 나라마다 상이하고 이는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성행동 자체를 문제행동으로 접근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나 청소년의 출산은 낙태까지 허용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방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출산 이후에는 탄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성행동, 임신, 출산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인 여부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청소년의 임신 자체가 개인과 가족에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임신 단계에서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상당수는 입양으로 종결되고 있어 생명윤리문제, 아동의 인권문제, 청소년의 건강·보건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출산 이후 자녀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도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거나,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학업중단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결국 저학력, 비숙련 상태에서 자녀양육, 학업,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가족의 지원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면 성인기 이후 만성 빈곤상황에 놓이기 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신,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학습권이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양육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자립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임신·출산의 세계적인 경향을 볼 때 최근 10년간 OECD 국가의 15~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5명 내외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같은 기간 청소년 출산이 증가한 몇 안 되는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청소년 출산을 사회문제로 보는 이유는 청소년 자신과 그 자녀에게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³⁾ 따라서 청소년 출산율 감소 이면에는 청소년 임신 예방 정책의 성공과 함께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따른 결과가 공존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기의 준비되지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가족정책 중심의 사후접근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즉 교육정책, 가족정책을 통한 사전예방적 접근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은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임신과 출산단계의 지원과 출산 후 양육지원이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입양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출산 장려가 주요

3) 이와 같은 청소년 한부모의 취약성은 출산 이전 아동·청소년기에 이미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지 혹은 출산 이후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정책 아젠다로 자리잡고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천 여 명에 달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외 입양 아동 10명 중 9명은 미혼모 아동이며 이들 중 절반이 청소년 미혼모이다. 즉, 양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친생모인 청소년 미혼모가 입양이 아닌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아동과 미혼모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 정부의 청소년 한부모 관련 국정과제는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과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건강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등이다.

표 1 새 정부의 청소년 한부모 관련 국정과제

국정 목표	국정 전략	국정 과제	주요추진계획
맞춤형 고용 복지	생애주 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저 소득 층을 위 한 생활 영역별 맞춤형 급여체 계 구축	① (빈곤예방정책 강화)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중산층 도약 기반 마련 ②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조정통합 ③ (사각지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재산의 소득 환산제 합리화
		건강한 가정 만 들기	① (가족가치 확산) 자녀 및 부부간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및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행복가족 프로그램’ 운영, ‘자살과 이혼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전개 ②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육 시설·유치원, 초·중등학교, 청소년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실시, 공공기관·가족친화기업 등 직장교육에 아버지 교육과정 개설 및 부모교육 강사 양성 ③ (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신청 가족대상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양육비 지급 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④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강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복지지원 시스템 일원화 및 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 확대, 아이돌보미,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지원 등의 조손 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청 소 년 역량 개 발 및		①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체험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 소년 수련시설 확충, 프로그램 확대 및 지도사 배치 등으로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국정 목표	국정 전략	국정 과제	주요추진계획
		건 강 한 성 장 지 원	②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쉼터, 상설인터넷 치유학교 등 위기청소년 상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③ (청소년가족서비스 연계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 복합적이고 연관성이 높은 청소년과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가족통합지원서비스 제공 ④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강화)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저 출 산 극 복 과 여 제 활 동 대	행 복 한 임 신 과 출 산	①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영양플러스 지원, 난임 부부 체외수정 지원 확대, 산전 방문간호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확대,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 확대 추진 ② (고위험 임신부 지원) 고위험산모에게 고운맘카드(50만원)와 경비추가 지원,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설치·운영 ③ (임신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 공공형 산부인과 16년까지 단계적 확대 ④ (자녀장려세제 도입)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수준·방법 등을 검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⑤ (다자녀 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단계적 확대,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 마련 ⑥ (일터에서의 임신·출산지원 강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참여 사업장 지원 수준 인상,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⑦ (출산정책 거버넌스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인구정책컨트론타워 운영, 공공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안 심 하 고 양 육 할 수 있는 여 건 조성		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② (맞춤형 보육 서비스) 일시보육서비스 확대 검토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 확산 ③ (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조성)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 확대 검토·추진,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확대 등 ④ (돌봄서비스 확대) 영아종일제 지원, 시간제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⑤ (학교내 돌봄강화) 오후 5시까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무료 제공, 저녁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⑥ (문화예술 돌봄교육 활성화) 방과후 돌봄교실 연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소외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대상 1인 1예능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무 상 보 육 및 무 상 교 육 확대		①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보건복지부) (보육료 전액 지원)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 이용 비용 지원 검토 (적정보육료 산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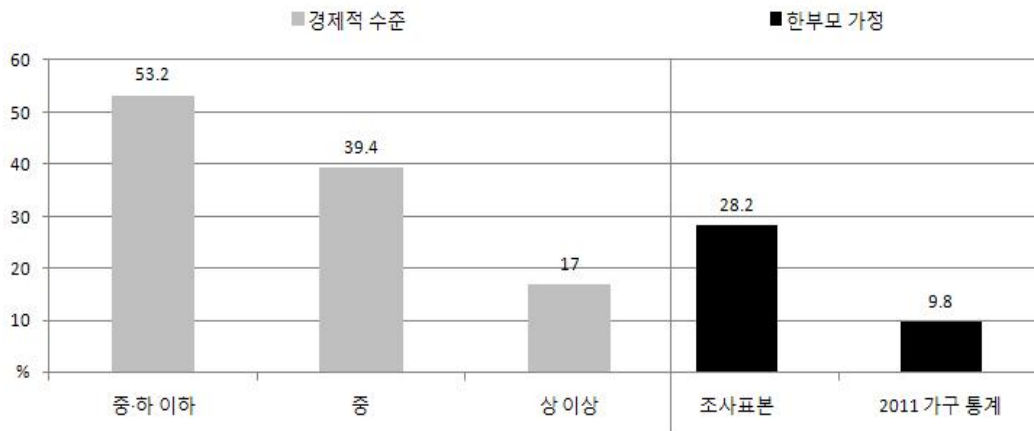
국정 목표	국정 전략	국정 과제	주요추진계획
			(양육수당) 시설미이용 0~2세 차상위 가구에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소득구분 없이 0~5세까지 전 계층 확대 (평가인증) 평가인증 강화 및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 ②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교육과학기술부)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 (교사 확충 등)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에 필요한 유치원 교사 확보 및 역량강화
창의 교육 문화가 있는 삶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①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실시, 학생참여와 협력 학습 강화,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 추진 ②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개선 ③ (교과서 완결 학습 체계 구축) 참고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 ④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⑤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재학중 직업체험 확대, 온라인 진로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안전과 통합의 사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①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②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성범죄자 관리체계 확립 ③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학교 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①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지정 ② (상담·치료지원 강화)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 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상담·치료·지원 강화 ③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 개발하고 단계적 보급 확대
		아동 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발달 지원	① (드림스타스센터 확대) 아동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빈곤아동이 많은 읍면동 전체로 단계적 확충 ②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경제교육, 후원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과 연계 ③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 아동인권 및 안전 관련 총괄 조정체계 구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④ (입양아동의 안전·권리 보호) 국내 입양가정 및 미혼모 지원 내실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현안과 입법과제

1. 청소년 임신 예방을 위한 취약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1) 건강한 가정만들기 :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강화

청소년 한부모를 통해 이들이 성장한 가정 환경을 살펴본 결과, 조사 표본 457명 가운데 양친가정(52.7%)에서 자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한부모가정(28.2%), 조손가정(5.9%)도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비율이 9.3%임을 감안하면(통계청, 2011) 본 표본의 한부모가족 비율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하 이하'라는 응답이 53.2%에 달해 저소득 취약 가정의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그림 1 참조). 적어도 본 표본에서는 부모의 빈곤과 가족 유형까지 대물림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저소득 취약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가족기능의 회복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1】 청소년 한부모 가정 환경

현재 지역사회 내 통합서비스는 아동복지법(제37조)을 근거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과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이 대표적이다. 먼저 전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만 12세(초등학교) 이하 아동 및 가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 내용 및 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개 기초지자체 대비 드림스타트 설치 비율은 83%(191개)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상 아동을 초등학교 이하로 제한하여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의 중학생 이상 아동·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가족기능 약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이 1백만 명에 달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09) 초등학교에 집중된 방과후 돌봄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국정과제(돌봄서비스 확대, 학교 내 돌봄강화, 문화예술 돌봄교육 활성화) 추진 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기존의 청소년 방과후 돌봄사업 활성화와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드림스타트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방과후 돌봄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취약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내 통합서비스가 연계, 재편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1)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청소년정책 내에서도 별도의 통합서비스가 가동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동법에서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다(제2조). 그러나 CYS-Net 설치 비율도 지자체 수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1인당 연간 180여 명의 (학업중단 포함)고위기 청소년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사례관리에는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지연·전연진·차성현, 2012).

2011년 현재 임신·낙태 문제로 CYS-Net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는 모두 1,439건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의 10배에 달한다(표 2 참조). 지원 내용을 보면 상담·정서적 지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학업, 의료, 기초생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임신·낙태와 같은 위기 사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상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보강하고 동시에 가출 및 학업중단을 포함한 고위기 여자 청소년의 임신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정과제인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기 위한 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표 2 CYS-Net 임신·낙태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단위: %(건))

지원서비스	여자	남자	전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서비스	52.2(682)	78.2(104)	54.6(786)
사회적 보호서비스	10.6(138)	0.8(1)	9.7(139)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서비스	25.7(335)	12.0(16)	24.4(351)
교육 및 학업지원서비스	1.0(13)	4.5(6)	1.3(19)
자활지원서비스	1.3(17)	—	1.2(19)
의료지원서비스	4.2(55)	3.0(4)	4.1(59)
법률 및 권리구제 지원서비스	0.5(7)	—	0.5(7)
여가 문화활동 지원서비스	4.5(59)	1.5(2)	4.2(61)
계	100.0(1,306)	100.0(133)	100.0(1,439)

자료 : CYS-Net 종합정보망 DB; 김지연·전연진·차성현, 2012: 109.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임의규정 개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가출청소년과 미혼모,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특별지원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욕구와 다양한 문제를 동반한 위기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보다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입양 청소년 미혼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입양 미혼모의 위기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요구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및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른 미성년 친생부모 (추가 안)**

(3)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청소년 한부모의 첫 성관계 경험 나이와 임신 횟수를 보면 19세 미만의 경우 16.4세, 1.26회, 19세 이상의 경우 18.6세, 2.07회로 성관계 경험은 저연령화되고, 이로 인해 연령이 증가하면서 임신 횟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임신 예방과 출산 후 지원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신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고위험 임신부’ 및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보고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청소년·가족서비스 연계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가족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으로는 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필수 연계 기관의 범위와 역할, 연계 사업의 범위, 성과 모니터링과 관련한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기존에 아동, 청소년, 가족을 각각의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인프라가 존재하여 이들의 역할 및 기능이 상호 중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 시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기능 강화 등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강화 추진계획과 병행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학교보건법」 실효성 제고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계획에는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교과 역시 같은 선상에서 논의 가능한 교과라 할 수 있다.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보건교육이 사실상 의무화되었다(동법 제9조 제2항). 이에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각 1개 학년을 정하여 연간 17시간(1학기 동안 1주일에 1시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보건복지부)’ 역시 계획임신, 건강한 출산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1020을 타깃으로 피임실천교육, 위기임신 전문상담 기반 구축, 임신·출산 청소년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비해 중·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교 간 편차가 클 수밖에 없고 보건교사 배치도 6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육 현황

○초등학교 5,6학년 재량활동시간으로 연간 17시간 중 5시간 내외로 보건교육 시간에 성과 건강 관련교육 포함

－ 체육교과 5학년에 연간 5시간 내외 성교육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2008)

○중·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연간 34~68시간 보건교과목에 8시간 내외의 성교육 일부 포함

－ 체육교과, 기술·가정 교과에 연간 5~20시간 성교육 포함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79호(2007)

○전국 중·고 보건교사 배치현황 : 평균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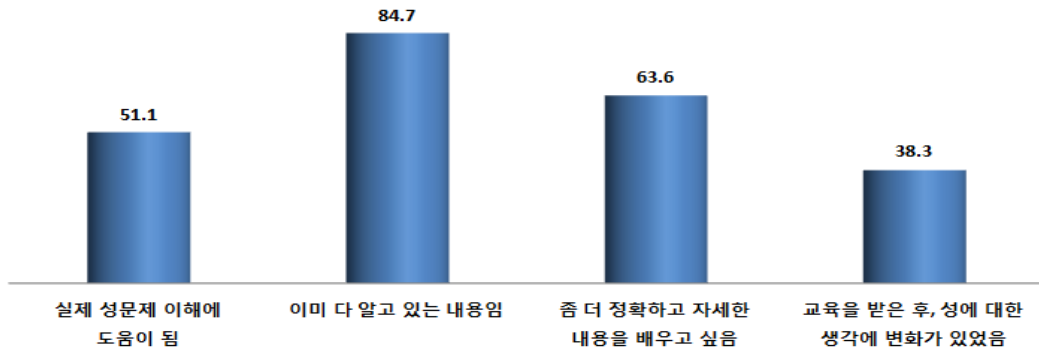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2010),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보건교육포럼(2011)에서도 관련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고등학교의 보건과목 선택 비율은 전체 학교의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 법적으로 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적 취지와 실상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보건교육 의무화제도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건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편성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한 토론식 성교육이 진행된 반면, 비 선택 학교는 학년 혹은 전교생 단위의 집단 강의 중심의 형식적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과목 편성 원칙과 성교육 시수를 보장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 조사표본 청소년 한부모 457명 가운데 학교 성교육 경험은 9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에 관한 정보도 학교(31.1%)에서 얻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학교 성교육이 실제 성문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1.1%, ‘교육 후 성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는 38.3%에 불과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건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장치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19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일수록 ‘실제 성문제 이해에 도움이 되고 교육을 받은 후 성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학교, 저소득 취약지역(혹은 지역청 단위)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보건과목 의무 편성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⁵⁾

4) 2012년 현재 교급별 보건교육 선택과목 채택 비율은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황임.

5) 원하지 않는 임신은 하게 된 이유는 피임실패(20.9%)보다 피임을 하지 않아서(79.1%)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피임방법 등 교육 내용적인 면의 변화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를 합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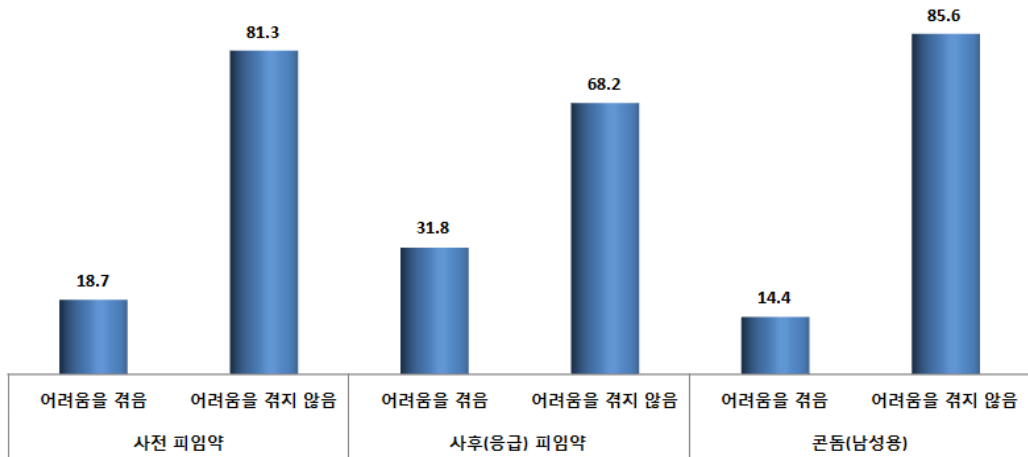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47~48.

【그림 2】 학교 성교육에 내용에 대한 평가

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청소년의 피임 접근성 제고

청소년 한부모의 상대 남성은 애인이나 남자친구를 비롯하여 지인이라는 응답이 95%로 가장 많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포함한 기타라는 응답은 4.8% 정도였다. 반면, 임신 당시 상대 남성의 나이를 살펴본 결과 75%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청소년 성보호 대책에 있어 청소년 성문화 및 성보호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피임방법을 질문한 결과, 남성용 콘돔은 구매가 쉬워 접근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장 낮았고, (사전, 사후 포함)경구 피임약은 상대적으로 접근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은 후 구입이 가능한 사전 피임약과 달리 응급 피임약(사후)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응급 피임약은 성관계 이후 72시간 이내 복용하지 않을 경우 피임효과가 거의 없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긴급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응급실을 통해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낮은 병원 접근성, 사후 피임약 접근성 강화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약품 분류에 대한 재논의가 요구된다.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71.

【그림 3】 경구 피임약 및 콘돔 구입 시 어려움 경험

3. 임신·출산 단계의 기본권 보장

1) 행복한 임신과 출산 지원 : 자기결정권, 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 보장

(1) 청소년 한부모의 자기결정권

원하지 않는 임신이 행복한 출산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청소년 임신 상당수가 불법 낙태로 종결되고 있고, 연간 총 34만 건(미혼 42%)의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혼여성의 93.7%가 ‘사회경제적 이유’ 특히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로 ‘불법’ 낙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인공임신중절 시술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시 술 이 유		기혼여성(%) n=3,384	미혼여성(%) n=2,452
건강문제	부모의 건강문제	93 (2.9)	4 (0.2)
	태아의 건강문제	126 (3.7)	11 (0.5)
	임신 중 약물복용	427 (12.6)	132 (5.4)
가족계획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2,368 (70.0)	70 (2.9)
	터울조절을 위해서	208 (6.2)	0 (0.0)
	원하는 태아의 성별이 아니어서	41 (1.2)	2 (0.1)
강간		0 (0.0)	11 (0.4)
사회경제적 이유 등	경제적인 어려움	591 (17.5)	84 (3.4)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	68 (2.0)	2,298 (93.7)
	기타	141 (4.2)	5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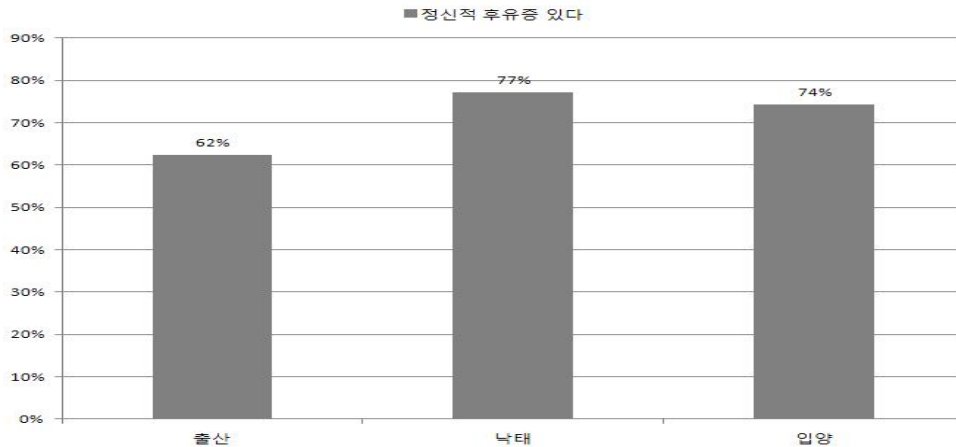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2010).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현재 낙태의 허용한계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는 형법 제29조에 의한 범죄에 해당한다. 즉,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불법’이며 이로 인해 임신한 청소년 상당수가 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조사 표본인 청소년 한부모 457명 가운데 낙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8.2%(83명)에 달하였고 이들 중 77.1%가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였다(표 4, 그림 4 참조). 특히 낙태는 출산, 입양에 비해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이 임신을 인지한 시기가 평균 13.6주로 임신 초기를 넘어선 시점이라는 점에서 낙태 시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4 출산, 낙태, 입양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후유증 있다	후유증 없다	계
출산	212(62.4)	128(37.6)	340(100.0)
낙태	64(77.1)	19(22.9)	83(100.0)
입양	113(74.3)	39(25.7)	152(100.0)



【그림 4】 출산, 낙태, 입양의 정신적 후유증

모든 여성은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임신·출산 여부, 임신의 지속·중단에 관한 선택, 임신·출산 횟수, 임신·출산 간의 기간 조절 등 모든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는 반한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낙태가 정당화되는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출산율은 인공임신중절 비율과 연관해서 봐야 하는 문제이며, 청소년 불법 낙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 임신 문제는 사실상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하여 낙태라는 일종의 ‘출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의 1차적 우선순위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이 되어야 한다. 즉 저출산 극복이 국가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출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과는 별도의 사안이며,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청소년에게 낙태를 강요할 수 없음을 포함한다. 또한 임신·출산이 강제로 퇴학을 당해야 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사유임을 의미한다. 헌법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친권을 부모(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으로도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허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도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임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령기에 학생이 아닌 부모됨을 선택하여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학령기를 학생신분으로 보낸 청소년도 취업하지 않고 부모나 사회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인생의 발달과업이 획일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청소년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먼저 부모가 되고 나중에 공부하고 자립해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 다만 사회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언제 임신과 출산을 언제 부모가 되느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는 자기결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성숙한 판단능력을 가진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을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한다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숙하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도 성인에 못지 않은 충분하고 성숙한 판단능력이 가능한 존재로 본다면 연령을 기준으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⁶⁾ 이를 법률과 제도로써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2) 평등권

헌법은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제1항).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성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19가지 차별금지사유로 임신 또는 출산을 포함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3호),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임신이나 출산은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은 나이(연령)를 이유로 한 차별,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이 외 청소년의 성행위를 이유로 한 차별 역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잠정적 우대조치(affirmative

6)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등, 판례집 14-2, 390면 이하, 397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action)는 법적으로 허용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9).

(3) 사회보장수급권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으로 생계, 교육, 주거, 보건(의료), 모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임신·출산은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대표적인 예이다(동법 제41조 제1항). 양육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양육 관련 복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 중 일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행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거나, 한부모가족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에게 이행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교육지원도 의무사항이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역별 편차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거나 청소년 한부모의 낮은 제도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한부모의 자기결정권, 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및 생활의 전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골자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현재 의원 발의 된 「아동·청소년인권법」, 「차별금지법」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⁷⁾

2) 학업중단 예방 및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학습권 역시 임신·출산과 관계없이 청소년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다행히도 본 조사 표본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 317명 가운데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21.1%로 나타나, 학업중단 이후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67명) ‘아이를 돌보거나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5.%, 불과한 반면 ‘임신사실이 주위에 알려질까 봐 스스로 그만 두거나’, ‘부모, 주변 편견, 학교(교사)의 강요’로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65.7%에 달하였다. 즉 청소년의 차별에 대한 지각과 학교 환경에

7)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의안번호 : 1904411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 1903793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3. 3. 30),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 1902463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6)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이에 따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 인식과 학교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임신출산에 의한 학업중단과 학교 이탈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생 미혼모 교육위탁기관이 전국 1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0조 제3항).

그러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보통교과(40%)의 성적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역청 혹은 개별 학교의 재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해당 학생을 위탁교육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원적 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권유하여 전학했다가 출산 이후 본교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1개 학년 평균 204시간의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168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 간 전학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권고 전학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5조(수업일수) (생략)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가, 주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셋째, 대안학교의 경우 본교 수업에 20일 이상 출석 이후 대안학교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청소년 미혼모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즉 학생 미혼모 대안학교의 경우 3월에는 사실상 수업 공백이 발생하여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출석수업 대체’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을 참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수업일수 등) (생략) ②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초·중등교육법」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래 시행령 제54조에서와 같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이 학교장 재량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학습권이라는 고유의 권리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와 직간접적인 처벌 조항이 빠져있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가 학습부진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적용 자체에 한계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 시킬 경우 인권, 권리에 비해 보호, 시혜가 앞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은 학습권 향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임신·출산과 같은 사안에 있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가칭 「성평등교육법」의 별도 제정도 검토 될 수 있다.

예로, 대만의 성평등교육법(Gender Equity Education Act)에는 임신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Article 14-1에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임신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성평등교육법 14-1에 규정된 보조는 임신을 하거나 최근에 자녀를 출산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캠퍼스 내외의 자원을 사용하고, 교육을 완료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유연한 조치를 개발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오하이오(LEAP 프로그램), 콜로라도 덴버시 등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사례와(학점 및 학위 취득, 교내 보육 시설 운영, 양육 및 아동발달 교육, 10대 아빠와의 가족 유대감 형성 등), 영국 교육부의 십대 부모에 대한 지원(출산 전후 결석 허용,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수당 지원, 취업준비(New Deal of Lone Parents) 지원, 18세 이하 10대 미혼모에 임대 주거 할당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⁸⁾

3. 입양 미혼모 지원 강화

1)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입양아동의 안전·권익 보호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 다만 법원의 입양허가제, 입양숙려제가 도입되어 친생모의 입장에서 입양절차와 입양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로 청소년 미혼모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피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낙태, 영아유기, 불법입양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에 최근에는 청소년 미혼모에 한해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창설 절차를 허용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동의하는 경우 숙려기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8) <http://florencecrittenton.wikispaces.dpsk12.org/>

골자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의원 발의 된 상태이다.⁹⁾

관련하여 대표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미혼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생모인 아동과 출생아동의 권리가 상충한다.

둘째, 친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를 대신하여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910조). 따라서 친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출생아의 친권을 조부모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친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와 관련한 문제이다. 최근 입양 신고 시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입양 청소년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양이 되거나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기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기재되는 ‘일부사항’, ‘전부사항’이라는 정보 자체가 낙인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항 혹은 기초사항 등으로 개선하고, 기록사항의 열람범위와 청구가능한 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2015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은 운영이 중지되어 현재 33개소인 미혼모자시설 가운데 16개소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향후 2년 내 미혼모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일시보호를 넘어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해서는 당장 부족한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넘어 시설보호의 새로운 형태와 재가(在家)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숙려제 기간의 문제이다. 최근 복지부는 입양숙려기간을 전후로 산후 돌봄비로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모성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입양보내기와 양육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 1주일의 숙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현행 학업중단 숙려기간도 15일에 달한다. 반대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을 포함하여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자녀 양육이 불가능한 청소년에게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 숙려기간 동안 산후조리 외에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

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903353 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3. 1. 18)

제공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출생아에 대한 ‘보호동의’와 ‘입양동의’를 분리하여, 친생모가 숙려기간 동안 보호동의 할 경우 출생아를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고, 이를 입양동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숙려기간 이후 후 ‘입양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양특례법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추가) 다만 친생부모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 간 아동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의 출생일 전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2) 영아 유기 합법화에 대한 논의 검토

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과 맞물려 출산한 자녀를 유기하여 아동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영아 유기 합법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¹⁰⁾ UN은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동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면, 유럽 상당 수 국가에서 베이비 박스(baby box, baby hatches)는 원하지 않는 아이(unwanted baby)를 ‘안전한 장소에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행위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유럽 내 베이비 박스는 독일 99개, 폴란드 45개, 체코 45개, 헝가리 26개, 슬로바키아 16개, 리투아니아 8개, 이탈리아 8개, 벨기에 1개, 네덜란드 1개, 스위스 1개 등에 설치되어 있고, 캐나다 1개, 말레이시아 1개 이 외 오스트리아, 일본, 미국 등에도 설치되어 있다(BBC News, 2013. 3. 13).

즉, 합법적 영아유기는 일정한 안전장치가 담보된 곳에 영아를 유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익명의 출산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아동이 부모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작동할 수 있고 유기한 여성의 도덕적 부담감을 일부 완화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출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소극적 측면인 ‘낙태권’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대안으로 일부 인식되고 있다.

10) 이준일(2011). 영아유기의 합법화에 대한 검토, “법제연구” 제40호, p.337면 이하 참조

한편 본 연구의 조사 표본에서 현재 임신 중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의사를 질문한 결과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없고 양육지원제도가 갖추어져 있어도 양육할 의사가 없다’는 경우가 39%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합법적 영아유기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표 5 참조)

표 5 사회적 변화에 따른 출산/양육 의사(임신중)

단위: 명(%)

구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만 없어도 출산/양육할 의사가 있다	양육 지원제도만 잘 갖추어져 있어도 출산/양육할 의사가 있다	둘 다 갖추어져야만 출산/양육할 의사가 있다	둘 다 갖추어져있다 하더라도 출산/양육할 의사가 없다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8(11.1)	10(13.9)	28(38.9)	23(31.9)	3(4.2)	72(100.0)
19세 이상	3(4.7)	16(25.0)	15(23.4)	30(46.9)	0(0.0)	64(100.0)
소계	11(8.1)	26(19.1)	43(31.6)	53(39.0)	3(2.2)	136(100.0)

4.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1)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본 조사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수는 한 명(9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을 구분한 결과 2세 이하 72.7%, 3~5세가 27%로 99.7%가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육(교육)기간 이용률은 2세 이하가 26.5%에 불과하고 3~5세는 87.1%에 달하였다.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14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집에서 돌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가 50.7%로 가장 많았고, 보육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3.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자리가 없어서(6.1%), 비용 부담(3.4%), 주변에 보육기관이 없어서(0.7%)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맞춤형 보육 서비스’, ‘돌봄서비스 확대’ 및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등 저출산 극복 대책과 연장선상에서 보육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지원법」을 근거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고,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최근 일부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¹¹⁾ 이 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정에 대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제공하여 일가정양립과 한부모가족의 나홀로 아동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부 개정안에는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보육교사가 방문하여 1대 1로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경기도에서 기 시행한 제도로, 그간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에 가정보육이 배제되어 보육료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육교사의 경력 인정이 불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본형(기존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서비스가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맞춤형 보육서비스, 무상보육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추가 비용부담으로 정책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시보육서비스 확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¹²⁾ 기존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의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시보육 이용 총 시간에 제한을 둘 지 여부와 야간 보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

반면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및 경제활동 대신 자녀 양육을 선택할 경우 자녀가 일정 연령(3세 정도)에 달할 때 까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는 부모의 소득지위와 무관하게 이들의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기초생계비를 지급하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취업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이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적인 생계비 지원을 보장하되 근로소득은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예치케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김혜영 외, 2009).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5%로 OECD 국가들과(평균 47.2%)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고등교육 진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2011년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481천명 규모로 이 가운데 재학수강(학교 통학, 학원 수강) 인구가

1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902863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2012. 11. 29))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 1904806 보건복지위원장, 2013. 5. 3)

87.1%로 압도적으로 많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83천명(1.8%) 정도이다(여성가족부, 2012: 311). 즉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립을 목적으로 당장의 경제활동 참여를 중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일한 연령대의 청소년도 경제활동보다 학생신분으로 부모에 의존해서 지내는 경우가 더 많고 의존 기간 역시 이 또한 사회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되고 난 뒤에 공부하고 자립해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우리사회의 열린 시각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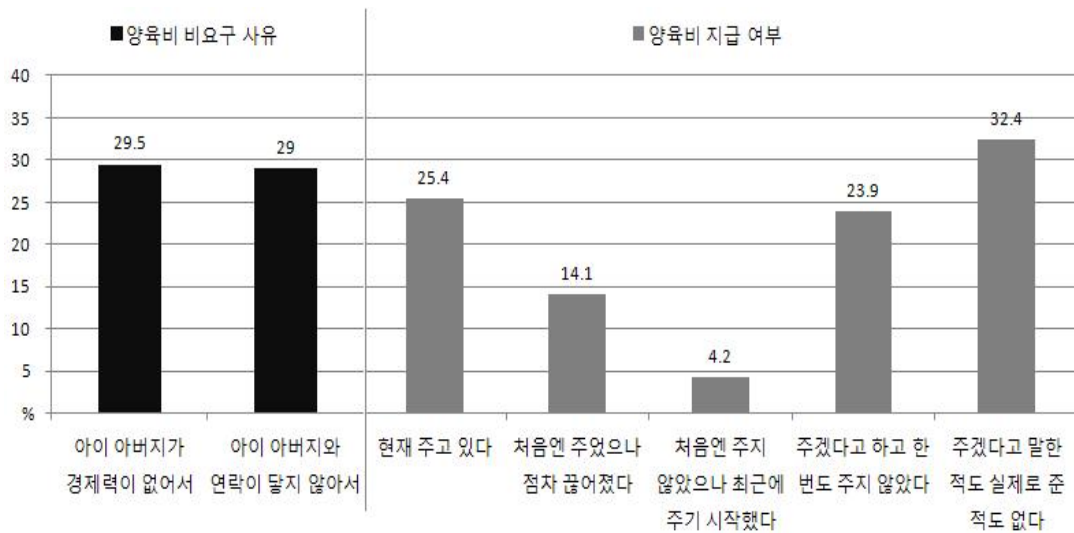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 최저생계비 100%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등이 제공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7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는 정도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¹³⁾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나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 발의된 상태다.¹⁴⁾ 한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OECD국가 중 17개국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다.

본 조사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월 평균 총 소득은 68.02만원(19세 미만 60.18만원, 19세 이상은 70.86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25.4%에 그쳤다(그림 5 참조). 따라서 생계, 자녀양육, 자립 준비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는 더욱 의미가 클 수 있다.

13)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월 12만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월 15만원)과 비교할 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1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903818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2013. 2. 21),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1901664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그림 5】 양육비 비요구 사유 및 지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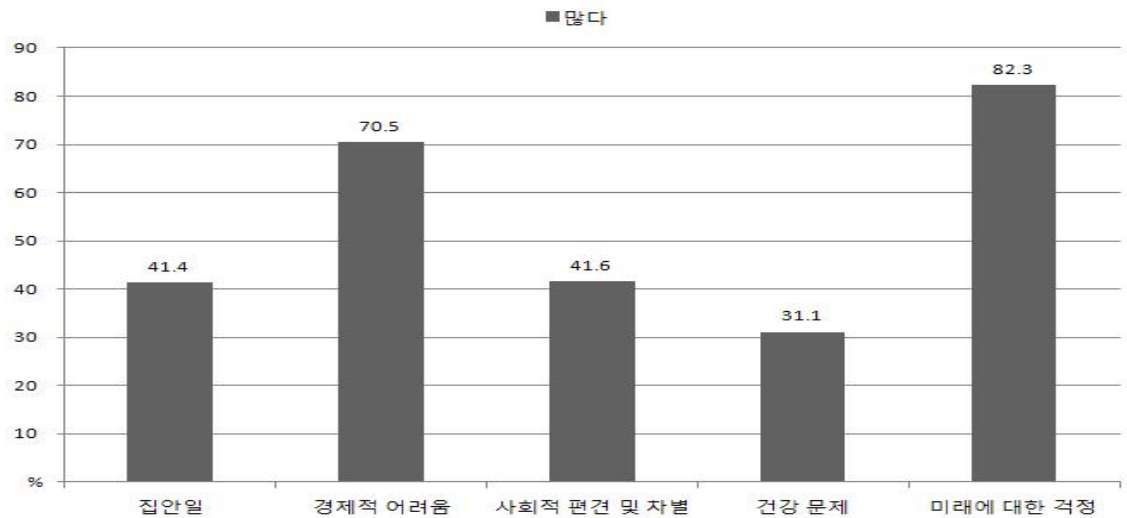
조사 표본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응답한 176명의 사유를 살펴보면, 연락하기 싫다(2.8%)는 응답에 비해 아이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거나(29.5%), 연락이 닿지 않아서(29.0%)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상대 남성의 75%가 청소년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거나 ‘비양육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의무자(보호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 전제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 신설
 -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의 역할 : 양육비 분쟁 상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소득재산 등 금융정보조사, 양육비 지급여부 모니터링,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 및 행정제재(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료의 제공, 재산압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 양육비 채무자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2조의6). 단, **양육비 채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채무를 이행한다.**
-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함.**

2)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자립 기반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1차적인 생계 지원(주거·의료·교육·해산자 할급여 포함)이 가능하다. 이 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15만원), 고교생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 자산형성계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료비(2011년 폐지), 자산형성계좌(2010년 기 가입자만 유지) 지원이 사실상 폐지되어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복지급여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시행규칙에서는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과 같이 여성가족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권리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 중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 우선입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제52조)상 공동생활가정의 특성화 운영 및 가정위탁 등 대안가정 우선 위탁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본 조사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7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10명 중 8명은 진로·자립을 포함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당장의 생계급여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자녀양육에 필요한 보육의료비(의료급여)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진로·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취업애로 청소년에 특화된 진로교육(교육급여)을 제공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에 성공하여 근로소득 등을 저축할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후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계좌지원 제도 운영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24세 이후에는 기존의 ‘희망키움통장’과 연계하여 성인기 등 전 생애에 걸쳐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면 자립지원정책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6】 상황별 스트레스 빈도

특히 본 표본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더 높았다.¹⁵⁾ 임신·출산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비해 학업 중단 이후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학업중단숙려제’가 임신·출산을 사유로 하는 학업중단 예방의 1차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하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혹은 「아동·청소년인권법」¹⁶⁾내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의 책무에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의 경우, 청소년기에 출산을 한 경우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입양 청소년 미혼모 상당수가 학업중단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급여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2항(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직간접적인 차별조항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15) 본 표본에서 각각의 학업중단율을 보면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72.9%, 양육을 계획 중인 경우(임신중)의 69.5%, 양육을 포기한 경우(임신중)의 62.5%로 나타났다.

16) 국제사회는 통합적인 아동인권법을 제정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최근 김상희의원 대표발의로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이 발의되어 있다(의안번호 : 4411, 2013.4.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나오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의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에 의한 출산과 자녀양육은 사실상 개인의 문제 이전에 예방 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정책, 교육정책의 역할이 강화되고 가족정책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둘째,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복지지원 시스템 일원화’가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의 다양한 취약성을 반영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 내 다양성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정책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법률에서 언급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과 의무조항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과 동시에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지역 간 편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과 직간접적인 처벌 조항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넷째, 청소년 한부모는 진로와 자립 준비라는 청소년기 과업과 자녀 양육이라는 성인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과업 수행자이다.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은 장래의 사회적 부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지원 제도 인지율은 여전히 36~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지연·전연진·차성현(2012).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09).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 _____ (2010).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 새누리당(2013).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백서**.
- _____ (2013). 2013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이준일(2011). 영아유기의 합법화에 대한 검토. **법제연구** 제40호.
- 통계청(2010c).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abroad/abroad_02List.jsp?parentId=1211035에서 2011년 9월 6일 인출
- _____ (2011). **건강심사평가원 분만건수**. http://kosis.kr/abroad/abroad_02List.jsp?parentId=1211035에서 2012년 9월 6일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의 인권**. 세미나 자료집.
- BBC News. 2013. 3. 13.

토론문

.....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김 혜 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조 주 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 난 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입법 과제 : 토론문

김 혜 영(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위기로 인해 출산의 가족화가 갖는 다양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구성권을 둘러싼 담론이 소개되고 다양한 가족의 사회통합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 부모됨의 의미와 문제, 부모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 경험의 특성, 임신과 출산의 경험, 그리고 이로 인해 봉착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의 적실성과 설득력은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본 주제가 갖는 시의성과 향후 청소년의 성경험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음. 즉 성적 주체자로서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성적 욕망에 관해 우리사회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가족 및 지역사회, 국가는 성경험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지위변화와 사회적 차별에 관해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

1. 왜 청소년의 성경험과 부모됨에 주목해야 하는가?

청소년의 성경험과 이로 인한 임신과 출산을 단순한 일탈적 행위의 결과로 볼 것인가? 현재적 사회변화로 인한 구조화된 긴장과 모순에 대한 청소년의 탈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개입의 범위와 지원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적어도 현재 청소년들의 성경험의 증가와 부모됨에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성 또한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

첫째,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규정의 괴리

과거에 비해 풍요해진 물질문화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자조적(self-help) 능력을 제공해주며, 주요한 정보제공자로서 기성세대의 역할과 권위를 무력화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글로벌 경쟁체계에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학습능력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학업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청소년 세대의 승인된 방식으로의 욕망실현은 더욱 지체되고 연기되고 있음(최근 만혼화 경향이 갖는 다양한 함의에 주목).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적어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지 않음. 그 결과 이들 세대에 대한 성교육은 말할 것도 없거나와 친밀성의 교환, 섹슈얼리티를 통한 파트너와의 소통방식 등은 철저히 청소년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고 있음. 과거와 같은 포래문화, 골목문화, 형제관계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관계맺음의 방식과 친밀성의 교환방식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음. 청소년들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무성적 존재(asexual-being)로 규정될 수 없음 또한 분명해짐.

둘째, 시장화로 인한 다양한 성적 자극에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의 부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빨리 쉽게 성적 자극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적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극적인 매체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성적 친밀감은 어디까지이며, 이들이 성적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때 필요한 주요한 행위의 원칙은 무엇인가에 관해 우리사회는 합의할 수 있는가? '사랑지상주의' 문화를 대량생산하는 사회체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실현과정으로 자리매김되는 성적의 욕망과 성관계에 대해 기성세대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산업조차 산업의 하위범주로 분류되는 욕망의 합법적 유통체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

셋째, 신자유주의 노동환경과 글로벌하게 유동하는 자본의 흐름으로 인한 가족간 계층격차와 가족구조의 불안정을 청소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과 청소년들의 로맨스 추구하고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청소년기에 갖는 낭만적 사랑과 성적 환타지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극실재(hyper-reality)화되는 환경에서 더욱 생생한 욕구를 자극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무방비하게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탈출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의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모두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원가족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지적되고 있음.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이나 친밀한 보살핌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꿈꾸는 자신만의 가족만들기, 친밀성 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족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가족의 현대성과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계층화된 현상임. 이런 점에서 주변부 계층이나 가족해체 등의 위기를 경험한 가족에서 성장한 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본 연구진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

2. 청소년의 성경험에 대해 기성세대가 답할 준비가 부재한데서 오는 다양한 모순과 긴장을 포함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이 가능한가? 현재 제안된 정책과제의 범주와 수준에 대한 평가?

그 어떠한 사회보다도 불확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당면한 좌절과 불안정성에서 오는 이들의 탈주와 이로 인한 성경험 등은 일탈이나 지위비행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왔음.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예방과 이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부모됨을 예방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경험에 대한 특정한 입장이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비록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의 최소화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성장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경험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음. 그러하다면, 정책의 상당부분은 청소년들의 성행동의 관행과 유형분석을 통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행동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성교육과 청소년 문화내에서 어떻게 보급·확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연계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특징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접근, 즉 현 법제도와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擇함으로써 정책기여도 제고에는 효과적이나 청소년 생활세계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으로는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가 가능함. 예컨대 그러한 논의체계로 인해 (3)청소년 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부분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의 구체성이 부재하고, 3)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교보건법 실효성

제고案 역시 보건교육의 강화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보건교육의 허와실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배제된 상황에서 수업시수의 강화만으로 보건교육이 적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제기됨.

일보 진전된 논의는 청소년 기본권 보장방안 부분임. 성행동의 귀결로 제기되는 여성의 임신, 출산과정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필요성과 그러한 환경구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제안함. 구체적인 규정이나 항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다만 이러한 법, 제도 개선 외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작동되는 '가족주의' '부계혈통' 승인과정으로서의 제도적 혼인과 출산의 순차적 계기(繼起)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 역시 상당부분 개선되어야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낙인과 배제의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청소년 한부모의 호칭, 이미지 등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고민 역시 수반되어야 함. 그리고 이러한 문화관행의 변혁은 곧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개입의 타당성과 설득력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입법 과제 : 토론회

조 주 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청소년 미혼모자 시설퇴소 후 양육·입양 현황 및 입양미혼모에 대한 검토

- 청소년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녀를 출산하여 시설에 입소하였던 청소년 중 상당 수는 여전히 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임.
- 전체 청소년 미혼한부모 중에서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은 소수이지만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직까지도 상당수는 입양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런 측면에서 김지연 연구위원의 발표내용 중 ‘입양 미혼모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신선하고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 미혼모자 시설 퇴소 후 양육·입양 현황

(단위: 명)

	계	양육			입양		미결정	기타
		본인	부모·가족	미혼부	국외	국내		
2011	2,460	669	36	23	324	1,114	236	58
2012	1,922	599	24	53	155	828	184	79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3)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 및 실효성 제고

1) 정책 현황(2013년 기준)

□ 지원목적

-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지원 도모

□ 지원현황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지원
 -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자 (기초수급권자 제외)로 구분 지원
- (연령기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를 기준

□ 지원대상별 지원내용(2013년)

지원구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지원
지원액	월15만원	연154만원 이내	실비	월10만원	월5~2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제외)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 5만원이하: 기초수급권자 – 20만원이하: 최저생계비150% 이하가구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 입금
비고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3년도 신규지원 불가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3)

2) 실효성 제고

- 우선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현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청소년 한부모가 자신의 원학교를 자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은 국가의 교육권 포기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도 않음.

표 2 최근 3년간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지원 가구	76	180	159
지원 금액(국비)	27	99	78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3)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됨.
 -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아동양육지원서비스, 학습지원, 주거지원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되는 바, 하루속히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이돌봄지원서비스¹⁾의 적극적 지원, 학습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교사들의 인식개선,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임.

1)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취업교육 등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보육과 함께 개별보육에 대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처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대상이 됨은 물론 사용시간의 제한완화 및 돌보미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향

허 난 영(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본 토론문에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사회적 권리로서의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그 기본 방향은 많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학력이 높지 않고 육아를 비롯한 사회활동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데다가 가족의 지원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만성적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자립 기반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부분은 안정된 주거와 양육, 자립을 위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주거지원에 있어서는 청소년 한부모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시설에서 입소하였다가 퇴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소 후 주거마련이 매우 어려우므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가 절박하다.

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저소득 한부모의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과의 경합이 심하고, 부양가족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거주기간 등 산정에서 배점기준상 불리한 상황들이 많아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그룹홈 형태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라든지, 국가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및 자격조건 완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그나마 시설에 거주하거나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약간 형편이 나은 편이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부모님과 살면서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양육을 도와주거나 양육방법도 알려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특히 원가족과 분리되어 부모, 친지의 도움 없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미혼모들은 더욱 그렇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취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하는 경우에도 야간이나 주말에 일이 생기면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받을 동등 구르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현재 전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저소득층(2인 기준 월 소득기준 1,385천 원)에게도 시간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어 소득이 거의 없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학업이 중단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이나 취업 준비 중인 청소년 한부모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또 사전에 신청하고 선입금 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경우에는 활용이 어렵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 480시간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과 마찬가지로 연 720시간까지는 정부지원이 되어야 한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을 파악(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시설에서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취업,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시간 확대 및 비용절감 이외에도 양육도우미 또는 양육지원교사(보육교사) 파견 등 별도의 아이돌봄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2012.11.29.)’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화되기를 기대한다.

청소년 한부모를 비롯한 모든 한부모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자립일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이 한부모 가장으로서 자립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원가족과 단절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청소년 한부모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 등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지원 체계에서 탈락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지원의 소득기준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하는 것과 함께 취·창업 등으로 자립하려고 애쓰다가 안정적인 수급자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막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정부정책이 각 부처별로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자립을 위한 통합시스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유형별, 적응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과 아울러 자립을 위한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한부모를 일시적인 복지대상으로 바라보고 잠시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자립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예산 절감 효과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인 쇄 2013년 5월 20일

발 행 2013년 5월 2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